

1. 개정이유

주택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지분율 등 판단 기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의 범위 및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예외대상 임차승용차의 요건 등을 신설하고,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상한배율 조정,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주식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이 지켜야 할 요청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의 공동소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및 지분율 등 판단 기준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주택수에 가산하는 공동소유자의 기준인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600만원 이상을 판단하는 수입금액을 해당 주택의 전체 수입금액에 지분율을 곱하여 구하도록 하며,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지와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

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의 범위 및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 예외대상 임차승용차의 요건 신설(안 제4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를 해당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및 운전자 채용에 관한 면접지원한 자로 규정하고, 리스 외에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30일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차량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 직원 등 업무관련자로 운전자를 제한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을 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비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계산 특례 신설(안 제60조제5항 및 제6항)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시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에 대한 계산특례를 매출액을 이용하는 방법과 매출총이익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신설함.

라.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소득상한배율 조정(안 제67조)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단순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소득상한배율을 간편장부대상자는 2.6에서 2.8로, 복식부기의무자는 3.2에서 3.4로 각각 상향 조정함.

마.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안 제86조의4제2항 및 제3항)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지점간 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에 있어 거래 인식의 고려사항에 중요한 인적기능을 추가하

고,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의 계산 절차를 마련함.

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대상 기준금액 조정(안 제97조)
경마의 승마투표권, 경륜·경정의 승자투표권에 대한 환급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에 대한 면제 기준을
1건당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하향조정함.

사. 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안 제99조의4)

납세조합에 대한 교부금 지원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한 조합원 수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도록 함.

아. 국세청의 주식 거래내역 자료 요청방법 규정(안 제99조의5)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체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소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을 초과해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유지비행훈련수당 및 유지항해훈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를 말한다.

제7조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1.벽지지역’ 및 ‘2.도서지역’ 중 군지역의 경우 열거된 면지역 전체를 말한다)

제11조 중 “영 제20조제1호”를 “영 제20조제1항제1호”로, “동조제2호”를 “같은 조 제1항제2호”로, “영 제20조제1호”를 “영 제20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대여이익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중 “21을”을 “18을”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고정자산”을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40조 중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한다.

제42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78조의3제8항”을 “영 제78조의3제9

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을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으로 한다.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운전자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5조 중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을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로 하고,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를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표에”로 한다.

제57조 중 “21을”을 “18을”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산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제60조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서 거주자의 연구 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 ⑥ 영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방법은 당해 과세기간부터 연속하여 5개 과세기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매출액 방법

- 1)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 A \times 50\% \times \frac{C}{B+C}$$

- 2)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미만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 A \times 50\% + A \times 50\% \times \frac{C}{B+C}$$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은 차감한다]

C: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차감한다)에 거주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매출총이익 방법

- 1)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A \times 75\% \times \frac{E}{D+E}$$

- 2)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미만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 A \times 25\% + A \times 75\% \times \frac{E}{D+E}$$

A: 연구개발비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

E: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제67조 중 “3.2”를 “3.4”로, “2.6”을 “2.8”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조제1항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을 말한다.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영 제155조제8항 및 제10항제5호,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를 “제3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고”로 한다.

제7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75조의2제1항을 삭제한다.

제8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을 “제71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4조 영 제171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제86조의4 제2항 중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내부거래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본은 다음 각 호의 절차

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의 배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에 관한 그 밖의 기능의 확인
5.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6.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 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9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95조의3제8호의2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호 중 “50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9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단서에서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30만원을 말한다.

제9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00조제29호의3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연금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 별지 제29호의2서식(5)

제102조제2항제8호 중 “고정자산”을 “자산에 대한”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⑮취득(개량)고정자산”을 “⑮취득(개량)유형자산”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⑩고정자산취득(개량)목적보조금”을 “⑩사업용자산취득(개량)목적보조금”으로 하고, “⑭취득(개량)고정자산명칭”을 “⑭취득(개량)사업용자산명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⑫ 유형고정자산(건축물·광업용 고정자산 제외)”를 “⑫ 유형자산(건축물·광업용 자산 제외)”로 하고, “⑭ 광업용 고정자산”을 “⑭ 광업용 자산”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유형고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하고, “고정자산”을 “자산”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6) 중 “제34조제2항”을 각각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제34조제2항제2호”를 “제34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지급명세서미제출·지연제출가산세)·제3항(계산서 관련 가산세)·제4항(증빙불비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제5항(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제6항(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제7항(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제8항(무기장가산세)·제9항(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2008. 1. 1 이후 적용됩니다)·제10항(신용카드매출전표미발급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제11항(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를 “「소득세법」 제81조(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

산세)·제81조의3(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4(공동사업장 등록·신고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5(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제81조의8(사업용계좌 신고·사용 불성실 가산세, 2008. 1. 1 이후 적용됩니다)·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2007. 7. 1 이후 적용됩니다)·제81조의10(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11(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1) 중 “유형고정자산”을 각각 “유형자산”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부표1,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부표2,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9서식, 별지 제19호의10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별지 제23호 서식(1), 별지 제23호 서식(4), 별지 제24호 서식(1), 별지 제24호 서식(2), 별지 제24호 서식(3), 별지 제24호 서식(4), 별지 제24호 서식(6), 별지 제24호 서식(6) 부표, 별지 제24호의4 서식(1), 별지 제24호의4 서식(2), 별지 제24호의4 서식(4), 별지 제29호의13 서식, 별지 제37호 서식(1), 별지 제37호의2 서식, 별지 제38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1), 별지 제40호 서식(4), 별지 제40호 서식(5), 별지 제40호 서식(6), 별지 제40호의2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별지 제45호의2 서식, 별지 제51호 서식, 별지 제53호 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83호의2 서식, 별지 제83호의5 서식, 별지 제84호 서식,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1,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의2, 별지 제84호의4 서식, 별지 제88호 서식,

별지 제100호서식, 별지 제10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하고, 별지 제29호의2서식(5), 별지100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세대 1주택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제5조(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청의 주식등 거래내역 요청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세청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등 거래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간주임대료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료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 연금계좌 이체명세서

([]가입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접수자 보관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가입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금융 기관	이관	④ 법인명(상호)	⑤ 지점명
	수관	⑥ 법인명(상호)	⑦ 지점명

I. 이체하는 연금계좌 명세	⑧ 연금계좌구분	[] 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 ([] DC [] IRP [] 과학기술인연금)	
		[] 연금수령 개시 전 [] 연금수령 개시 후	
	⑨ 계좌번호		
	⑩ 가입일자		
	⑪ 납입기간 만료일		
	⑫ 연금개시일자		
	⑬ 이체일자		
	⑭ 연금 실제 수령연차	⑮ 이체연도 연금수령 여부 [] 여, []부	

II. 이체금액 명세	구분		이체액			
	과세제외금액	⑯ 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				
		⑰ 그 외				
	이연퇴직소득	⑱ 세액이연분				
		⑲ 전환분				
	⑳ 세액공제(소득공제)분					
	㉑ 운용수익		(+)		(-)	
	합 계					

III. 과세이연 정보	이연퇴직소득세	㉒ 세액이연분	
		㉓ 전환분	

※ 첨부 : 연도별 연금계좌 납입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위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연금계좌 이체명세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이관 연금계좌 취급자

(인)

수관 연금계좌 취급자 귀하

작성 방법

1. ⑭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에 따른 것으로, 최초 연금 개시 신청 후 이체하는 날까지 해당계좌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
2. ⑮ 이체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연금수령 여부를 적습니다.
3. ⑯ 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 란에는 이체하는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서 인출한 금액에 있는 경우에는 인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4. ⑰ 그 외 란에는 ⑯ 이체하는 연도의 납입액 외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5. ⑱ 세액이연분(이연퇴직소득) 란과 ㉓ 세액이연분(이연퇴직소득세) 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세 징수를 이연한 퇴직소득과 해당 미징수한 퇴직소득세를 각각 적습니다.
6. ⑲ 전환분(이연퇴직소득) 란과 ㉔ 전환분(이연퇴직소득세) 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따라 소득이연퇴직소득에서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과 미징수한 퇴직소득세를 각각 적습니다.
7. ㉕ 란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2013년1월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8. ㉖ 란에는 이체하는 총 금액에서 ⑯~㉕ 란의 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양의 값이면 (+)란에, 음의 값이면 (-)란에 적습니다.

과세 기간	~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 본 서식은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각 국가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① 국가명		② 국가코드		
-------	--	--------	--	--

2. 공제한도 계산

(단위 : 원)

구분		금액
③ 직접·간접 경비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 등		
⑤ 직접·간접 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③ - ④)		
감면되는 국외원천소득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	
	⑦ 감면비율	
	⑧ 차감되는 감면 국외원천소득(⑥ × ⑦)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⑤ - ⑧)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결손국가가 없는 경우=⑨, 있는 경우 작성방법 참조)		
공제한도	⑪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	
	⑫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⑬ 공제한도(⑪ × ⑩ / ⑫)	
당기 공제 대상세액	⑭ 전기 이월액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	
	⑯ 당기 공제대상 세액 (⑭ + ⑮)	
이월배제액	⑰ 한도초과액(⑯ - ⑬, 음수인 경우 영(0))	
	⑱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	
	⑲ 이월배제 외국납부세액(⑰과 ⑱ 중 작은 금액)	
⑳ 차기 이월액(⑰ - ⑲, 음수인 경우 영(0))		

3. 공제세액 계산

(단위 : 원)

㉑ 과세 기간	㉒ 당초 외국 납부세액 발생액	㉓ 전기 누적 공제액	㉔ 당초 이월 배제액	㉕ 당기 공제대상 세액 (㉒-㉓-㉔=㉖)	㉖ 당기 실제 세액공제액 (합계≤㉓)	㉗ 이월배제액 (㉒)	㉘ 차기이월액 (㉕-㉖-㉗)
당기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가(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국가 포함)별로 구분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2. '1. 국외원천소득(결손) 발생국가' 의 ① 국가명란에는 국외원천소득(결손)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국가코드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3. ④ 국외원천소득에 직접·간접적으로 대응하는 경비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2항에 따른 직·간접비용을 의미합니다. 직·간접 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근로(연금)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연금)소득공제액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4. ⑤ 직접·간접경비 차감 후 국외원천소득란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⑥국외원천소득'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5. ⑥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감면적용대상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6. ⑦ 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7.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⑤에서 ⑧을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음수인 경우(즉 국외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음수를 그대로 적고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에는 영(0)을 기재합니다.
8.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있는 경우 아래 계산방식을 참고하여 기재하고, 결손이 발생한 국가가 없는 경우에는 '⑨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그대로 적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 400 에 대하여 산출세액 120 가정)

<기준 국외원천소득 계산방법 예시>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국별소득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	비 고
A국	100	500	$500 - (600 \times \frac{500}{1,000}) = 200$	$120 \times \frac{200}{400} = 60$	산출 세액 120
B국	0	△600	0	0	
C국	60	300	$300 - (600 \times \frac{300}{1,000}) = 120$	$120 \times \frac{120}{400} = 36$	
국내	-	200	-	-	
계	160	△600 1,000	320	96	

9.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⑩ 기준 국외원천소득'은 '⑫ 종합소득금액(또는 퇴직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 ⑮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은 별지 제11호서식 부표 2 '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상 '⑦ ~ ⑨ 외국납부세액'의 국가별 합계를 기재합니다.
11. ⑮ 이월배제 대상 외국납부세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을 의미합니다.
12. ⑮ 과세기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이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분부터 차례로 적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⑮ 당초 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에 기재합니다.
13. ⑮ 전기 누적 공제액란은 직전 과세기간까지 이미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을 누계로 기재합니다.
14. ⑮ 당초 이월배제액란은 외국납부세액 발생 과세기간의 이월배제액 계산금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15. ⑮ 당기 공제대상 세액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10항에 따른 직·간접비용과 관련된 외국소득세액 및 5년을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일괄 한도 방법을 적용한 사업자의 미공제 잔액(전기이월액)을 국가별로 안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 신청서'상 ⑮국가별 안분 전기이월액 금액을 발생연도별로 안분하여 각각 기재합니다.
16. ⑮ 당기 실제세액공제액란에는 ⑮ 공제한도에 도달할 때까지 ⑮ 당기 공제대상 세액 중 해당분을 차례대로 기재합니다.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 추 가 납 부 세 액		⑩ 중간예납 기준액 (⑦ + ⑧ + ⑨)
중 간 예 납 추 계 액 계 산	⑪ 중간예납기 간(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 이월 결손금	⑭ 종합 소득공제	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⑯ 산출세액 (⑮×세율)
							⑰ 중간예납 산출세액 (⑯/2)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	
	⑱ 감면 세액	⑲ 세 액 공제액	⑳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㉑ 수 시 부 과 세 액	㉒ 원 천 징 수 세 액	㉓ 세액공제 · 기납부세 액 계 (⑱ ~ ㉒)	㉔ 계 (⑰ - ㉓)
							㉕ 분납할 세액(2 개월 이내)
							㉖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⑳ 신 고 사 유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㉔ 중간예납추계액 ÷ ⑩ 중간예납기준액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
 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 하

구비서류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
------	---------------

작성방법

- ⑨ 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
 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⑬ 이월결손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 ㉔ 신고사유란: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㉔중간예
 납 추계액 계를 ⑩중간예납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구 분		세을구분코드	세을구분코드	합 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⑤		
필요경비		⑥		
장기보유특별공제		⑦		
토지등 매매차익(⑤-⑥-⑦)		⑧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⑨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⑧+⑨)		⑩		
양도소득세 세율		⑪		
산출세액		⑫		
가산세		⑬		
기납부세액		⑭		
납부할 총세액(⑫+⑬-⑭)		⑮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⑯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⑮-⑯)		⑰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토 지 등 매 매 차 익 합 계 액	㉔			
세 율	㉕			
산 출 세액(㉔×㉕)	㉖			
가 산 세	㉗			
기납부세액	㉘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㉖+㉗-㉘)	㉙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93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없 음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서울구분란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서울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⑫ 산출세액란: 서울구분코드가 10, 11, 31, 51, 52, 55 또는 56인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⑩란) × 서울 - 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고, 그 밖의 코드인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⑩란) × 서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세 율 표

구 분		코드	세 율
토지 또는 건물(비사업용 토지 등은 아래 내용에 따라 적용)		10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6%~42%)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외	1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지정지역 내	31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8호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26%~62%,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미등기자산		30	70%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1	50%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1세대 2주택	51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16%~5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2주택(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각각 1개씩 보유)	52	
	1세대 3주택 이상	55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26%~62%,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3주택 이상(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그 수의 합이 3 이상)	56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세율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7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8년 이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①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②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코드)		
⑦ 자 산 종 류		
⑧ 부동산 소재지		

③ 매매가액 계산

⑨ 양 도 일		
⑩ 양 도 면 적		
⑪ 매 매 가 액		

④ 매매차익 계산

기 준 소 득 금 액	필요 경비	주 요 경 비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⑬)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⑮ 계(⑫+⑬-⑭)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 산 한 경 비		⑯ 기준경비율		
				⑰ 금액(⑪×⑯)		
		⑱ 필요경비 계(⑮+⑰)				
		⑲ 기준소득금액(⑪-⑱)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⑳ 단순경비율			
			㉑ 금액[⑪×(1-㉑)]			
	㉒ 비교소득금액(㉑)×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㉓ 소 득 금 액(⑲ 또는 ㉒ 중 적은 금액)						

⑤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서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 취 금 액(B)	주요경비지출명 세서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㉔	㉕	㉖	㉗
임차료	㉘	㉙	㉚	㉛
인건비	㉜	㉝	㉞	㉟
계(㉞ = ㉛)	㉞	㉟	㊱	㊲

첨부서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5.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 ⑤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⑳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⑯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7. ⑳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㉑란은 "1"에서 단순경비율(㉑란)을 뺀 비율에 매매가액(⑪란)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8. ㉒ 비교소득금액란: ㉑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2, 간편장부대상자: 2.6)"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9. ㉓ 소득금액란: ㉑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㉑란의 기준소득금액과 ㉒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 "⑤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명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㉕ · ㉖란에 적습니다.
 -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㉕ · ㉖란에 적습니다.
 -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㉗ · ㉘란에 적습니다.
 11.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가. 급여 · 임금 ·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금액은 ㉙란에 적습니다.
 - 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 · 보관하고 금액을 ㉙란에 적습니다.
- ※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 · 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 · 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일반병의원 · 한의원 공통)

(앞쪽)

1. 기본사항			
①사업자등록번호		②상호	
④생년월일		⑤병과	
⑥업종코드			
사업장 시설	⑦진료실 ()m ²		인원 현황
	⑧수술실 ()m ²		
	⑨병실 ()m ²	⑩병상 ()개	
	⑪대기실외 ()m ²		
⑫고용의사 ()명		⑬외래의사 ()명	
⑭간호사 ()명		⑮기타 ()명	

2.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단위 : 원)							
구분	당해과세기간						
	⑩합계	⑪비보험	⑫건강보험	⑬손해보험 공제조합등	⑭의료급여	⑮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⑯기타수입
⑰합계 (⑱-⑲+⑳)							
㉑해당과세기간 수령금액							
㉒직전과세기간 진료분수령액							
㉓해당과세기간 진료분미수령액							

3.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 (단위 : 원)				
구분	㉔전기이월액	해당과세기간		㉕차기이월액
		㉖매입액	㉗사용액	
㉘치료의약품				
㉙의료소모품				

4. 마취제 취급량 (단위 : 원, ml)										
종류	전기이월		해당과세기간						차기이월	
			매입금액		㉚마취건수 (건)	사용(지급)금액				
	㉛용량	㉜금액	㉝용량	㉞금액			㉟용량	㊱금액	㊲용량	㊳금액
㊴국부마취제										
㊵전신마취제										
㊶출장마취비										

() 의료업에 대한 수입금액 및 의약품 등 사용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대상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하며 수의사는 제외됩니다.

2. 기본사항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종사인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 사업장시설은 반드시 m²(병상은 개수)로 적습니다.

※ 한의원은 고용의사란에 "한의사"를, 외래의사란에 "약제사"를 적습니다.

3.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을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공제조합, 외료급여, 기타수입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적고, 정산내역별 수입금액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⑰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으로 작성합니다.

⑱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통보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⑲손해보험·공제조합 등의 작성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⑳의료급여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되는 내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㉑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란은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을 적습니다.

㉒기타수입란은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적습니다.

㉓해당과세기간수령금액은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적습니다.

㉔직전과세기간진료분수령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금액(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적습니다.

㉕해당과세기간진료분미수령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공단부담금과 당기에 기수령한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

㉖치료의약품에는 의료업자의 전체 치료의약품(마취제를 포함합니다) 가액을 적고, 그 중에 특히 마취제에 대해서도 ㉔ 및 ㉕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5. 마취제 취급량

마취제의 매입금액·사용(지급)금액 등을 적고, 출장마취비는 용량과 지급액을 적습니다.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등 결정(경정)통지

귀하의 _____와(과) 관련하여 _____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아래와 같이 결정(경정)되었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통
지합니다.

(단위 : 천원)

과세기간	구분	종합소득 금액	이월 결손금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총결정 세액	고지 세액
	신고(당초)								
	결정(경정)								
결정(경정) 수입금액						결정(경정)기관			

끝.

발 신 명 의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조서관(전화 : _____, 전송 : _____)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통지서

각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가.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속개시일	

나.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상속인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피상속인과의 관계	주소	상속 지분	과세표준 (원)	납부할 세액 (원)

끝.

발신명의

직인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세무서 ○○○과 ○○○ 조서관(전화 : , 전송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 천 징 수 명 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 득 지 급 (과세 미납, 일부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거 주 자 · 비 거 주 자)	근로 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 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 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 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연금 소득	가감계	A40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 ⑰)	⑰ 당월조정 환 급세액계	⑱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⑳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 환급	⑯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⑰ 그 밖의 환급 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 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세 무 서 장 귀하							전 화 번 호					
							국세 환급금 계산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제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합니다.
-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 바. 가산세(⑧·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02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❶)과 환급세액 조정(❷)

-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기타·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
-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 ~ 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 = A05 + A06$ 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작성방법 (2)

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⑮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 [A10, A20, . .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⑮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㉔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총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⑨]은 ⑮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⑮ ~ ⑰)란의 ⑮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총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 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⑰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는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8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㉔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㉔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이자(A50)·배당(A60)·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 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개인)	비과세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영여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이자 · 배당 소득	세금 특례	기타 이자·배당소득		C11								
			영농·영여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자기구등 집합투자 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자기구의 집합 투자증권 배당소득		C94								
		세금 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자기구등 집합투자 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배당소득 계		C30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해지 추징 세액 등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해지추징 계		C50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 환 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비 거 주 자 (개 인)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원 천	내국 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 법인 (국내 원천 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20%	C88							
	법인세 계			C9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기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C01-C10, C20, C23, C28, C40]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C12, C22]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 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 [C14, C24]는 일반세율(22%, 20%, 15%, 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C30]은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C59], [C69]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 [C4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 [C61-C70](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 [A40], [A50], [A60], [A69], [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C81-C88]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단위: 원)

[illegible]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㉑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①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②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 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③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특 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 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 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illegible]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 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성 방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㉔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호)	①-1 영문법인명(상호)			② 대표자(성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상호)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⑦-1 비거주자 생년월일			⑧ 소득자구분코드		
	⑨ 주 소			⑩ 거주구분		⑪ 거주지국	⑪-1 거주지국코드	⑫ 계좌번호 (발행번호)	⑬ 신탁 이익 여부	
				거주자	비거주자				여	부

[illegible]

이
의
의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⑩ 과세구분란의 코드가 "E, L, H, R, O, B, N"인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으며, "G"인 경우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단서(Gross-up)의 적용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 ⑪ 소득의 종류가 "11~49"인 경우 이자소득, "51~99"인 경우 배당소득입니다.

※ ⑫ 유가증권표준코드란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제3쪽의 작성방법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채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지급명세서에 제출할 때,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외국에 소재하는 국제증권에탁결제기관 등을 통해 지급하면서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등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비거주자, 외국법인 등)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재를 생략하거나, 확인되는 중간 지급자를 소득자로 대신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안에 "√" 표시를 하며, 관리번호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명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 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외 국 인 등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 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 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 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 타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성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명의 또는 번호 등이 공란 또는 비실명인 경우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공란	999

12. 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안에 "√"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⑪-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만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배당소득자가 채권·주권 등을 실제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양한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익 여부란: □안에 "√"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작성방법

17. ⑭ 지급일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⑯ 과세구분															
개인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 상 미열거 소득 / 법인세 납세의무 없는 법인 소득)
비과세, 면제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득액 부정 수 포함)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 과세 ($<14\%$)	고율 과세 ($>14\%$)	비 실명	일반 세율 (14%)	기본 세율 ($6\sim 42\%$)	일반 과세	일반과세 (Gross-up) 기타 세율 일반 세율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 재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 징수대상 외 의 소득		
E	L	H	R	O	B	T	D	G	C	X	F	I	W	N	

⑰ 소득의 종류						
이자소득(11~49)			배당소득(51~99)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1)	11	내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소득세법 § 17①1)	51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2)	1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소득세법 § 17①2)	52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 포함)의 이자(소득세법 § 16①3)	13	의제배당(소득세법 § 17①3, 법인세법 § 16)	53			
신용계·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소득세법 § 16①4)	1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 § 17①4)	54			
외국법인 국내지점 등의 회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5)	15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소득세법 § 17①5)	55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소득세법 § 16①6)	16	외국법인 배당·분배금, 건설이자의 배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소득세법 § 17①6)	56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소득세법 § 16①7)	1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소득세법 § 17①7)	57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소득세법 § 16①8)	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소득세법 § 119 2호, 법인세법 § 93 2호)	5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10년 미만 등)(소득세법 § 16①9)	1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계약기간 10년 이상)(소득세법 § 16①10)	20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 17①8)	5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소득세법 § 16①10)	21					
비영업대금의 이익(소득세법 § 16①11)	22	주가연계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1, ELS)	60			
채권대차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 § 26④)	23	기타 파생결합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2, DLS)	6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따른 이자상당액(법인세법 시행령 § 114의2②)	24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배당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②)	62			
그 밖에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 § 16①12)	25	그 밖에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소득세법 § 17①9)	63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 § 16①13)	26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의 이익(소득세법 § 17①10)	64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상기 이외에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법인세법 § 93 1호)	27	상장지수증권(소득세법 시행령 § 26의3①3, ETN)	65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소득세법 § 14④)	PA			
개인연금저축(소득세법 § 86)	SA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소득세법 § 14④)	PB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세법 § 86의3)	SB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소득세법 § 20①)	PC			
장기주택마련저축(소득세법 § 87)	SC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소득세법 § 121의2③)	PD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세법 § 87)	SD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세법 § 21①1)	PE			
농어가목돈마련저축(소득세법 § 87의2)	SE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소득세법 § 21①2)	PF			
선박투자회사 배당(소득세법 § 87의5)	SF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소득세법 § 21①3)	PG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배당(소득세법 § 87의6)	SG	비거주자들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 21의2①)	PU			
비과세종합저축(소득세법 § 88의2)	SH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소득세법 § 29)	PH			
우리사주조합 배당(소득세법 § 88의4⑨)	SI	영농조합법인 배당(소득세법 § 66②, ③)	PI			
농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소득세법 § 88의4⑩)	SJ	영여조합법인 배당(소득세법 § 67②, ③)	PJ			
조합 등 출자금(소득세법 § 88의5)	SK	농업회사 배당(소득세법 § 68④)	PK			
세금우대종합저축(소득세법 § 89)	SL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L			
조합 등 예탁금(소득세법 § 89의3)	SM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PM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배당(소득세법 § 91의4)	SN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 § 12 1)	PN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소득세법 § 91의6)	SO	발행일~상환일(정리)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소법 § 129①1가, 조건부채권 제외)	PO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소득세법 § 91의7)	SP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 § 129②1)	PP			
공익기부집합투자기구(소득세법 § 91의8)	SQ	실지명목이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 § 129②2본문)	PQ			
장기주식형저축(소득세법 § 91의9)	SR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 § 129②2 단서)	PR			
장기회사채형저축(소득세법 § 91의10)	SS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 § 129④)	PS			
미분양주택투자신탁(소득세법 § 91의11)	ST	외국법인의 국제채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 93의2)	PV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소득세법 § 91의12)	SU	해외채권으로 "P0"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PW			
녹색저축 등(소득세법 § 91의13)	SV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2000.12.31.)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분(소득세법 부칙 § 2, 법률 제6051호)	PX			
재형저축(소득세법 § 91의14)	SW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PT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소득세법 § 91의15)	SX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한 경우	PY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소득세법 § 91의18)	SZ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PZ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세법 § 104의27)	SY	기타	ZZ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세법 § 87)	TA					
장병내일준비적금(소득세법 § 91의19)	TB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세법 § 87의7)	TC					

작성방법

20. ㉑ 금융상품코드란: 국세청에서 정한 금융상품코드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 ㉒ 유가증권표준코드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에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코드를 적으며, 유가증권표준코드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가증권발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외국법인 발행 유가증권으로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 해당 국가코드(2자리)와 관리번호(현지 부여번호 등, 10자리)를 적음].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 따라 백지신탁증권 주식은 유가증권표준코드가 아닌 백지신탁코드(BLINDTRUST)를 기입하고, 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당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여 수정 제출합니다.
22. ㉓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보유기간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의제원천징수 적용 채권등 (‘95.12.31. 이전 또는 ‘01.7.1. ~ ‘05.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55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7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총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 채권이자구분란에 "66"을 적는 경우에는 해당 보유자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99"로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23. ㉔ 지급대상기간란: 이자·배당소득 계산 시 사용된 이자·배당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파생결합증권)에 따른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4. ㉕ 이자율 등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만 해당함) 계산 시 사용된 이자율(할인율, 만기보장수익률 등)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좌(주)당 배당소득금액(투자신탁의 경우 1,000좌당 배당소득금액)을 적습니다(㉔지급대상기간에 원금, 이자율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해당 소득 지급 당시의 최종 원금으로 나눈 비율에 100을 곱한 숫자를 연환산하여 소수점 5자리까지 적습니다).
25. ㉖ 세율란: 실제 세액계산 시 적용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습니다(소액 부정수로 세액이 "0"인 경우에도 0%가 아닌 적용된 세율 등).
26. ㉗ 소득세·㉘ 법인세·㉙ 지방소득세 및 ㉚ 농어촌특별세란: 원단위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 사항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급 건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득 세	⑪ 지방 소득세	⑫ 농어 촌특별세	⑬ 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 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액	㉑ 비과 세소득	㉒ 필요경 비	㉓ 소득 금액	㉔ 세 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7															
8															
9															
10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㉕부터 ㉘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㉑(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⑧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㉓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⑮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⑲ 지급건수(소액 부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⑰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㉑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6. ㉒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㉓ 소득금액란은 ㉑ (연간)지급총액에서 ㉒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작성 방법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임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임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고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쇄(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의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65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78	사례금
7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증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필요경비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2019.1.1. 이후	100분의 60

-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부표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부표)

관리 번호	
----------	--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코드	⑮ 소득자 성명(상 호)	⑯ 주민(사 업자) 등록번호	⑰ 내·외 국인	⑱ 지급 연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 액	㉑ 비과 세소득	㉒ 필요경 비	㉓ 소득금 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정수 의무자	①사업자 등록 번호		②법인명(상호)		③성명	
	④주민(법인) 등록 번호		⑤소재지(주소)			

[illegible]

작성 방법

- | | | | | | | | | | | |
|------|-----|-----|----|-----|-----|----|-----|-----|-----|----|
| 구분 | 서양화 | 동양화 | 데생 | 파스텔 | 콜라주 | 판화 | 인쇄화 | 석판화 | 골동품 | 기타 |
| 작품코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소득자 구분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소		

⑨ 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⑥8 비과세 기타소득, ⑥9 분리과세 기타소득, ⑥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⑥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⑥1, ⑥3, ⑥5, ⑦8 제외), ⑥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⑥4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⑥5 직무발명보상금, ⑦1 상금 및 부상 ⑦2 광업권 등 ⑦3 지역권등 ⑦4 주택임주지체상금
⑦5 원고료등 ⑦6 강연료등 ⑦7 종교인소득 ⑦8 사례금 ⑦9 자문료등 ⑧0 통신판매 대여소득
⑥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⑥4, ⑥8, ⑥9, ⑦1 ~ ⑦7, ⑦9, ⑧0 제외)

[illegibl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정수(보고)의무자

귀하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⑫ 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4. ⑬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5. ⑰란부터 ⑳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진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거주구분</td> <td style="width: 50%;">거주자1/비거주자2</td> </tr> <tr> <td>거주지국</td> <td>거주지국코드</td> </tr> <tr> <td>내 · 외국인</td> <td>내 국인1 / 외국인9</td> </tr> <tr> <td>외국인단일세율적용</td> <td>여 1 / 부 2</td> </tr> <tr> <td>외국납소득 과세거주자 여부</td> <td>여 1 / 부 2</td> </tr> <tr> <td>종교관련종사자 여부</td> <td>여 1 / 부 2</td> </tr> <tr> <td>국적</td> <td>국적코드</td> </tr> <tr> <td>세대주 여부</td> <td>세대주1, 세대원2</td> </tr> <tr> <td>연말정산 구분</td> <td>계속근로1, 중도퇴사2</td> </tr> </table>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 · 외국인	내 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납소득 과세거주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내 · 외국인	내 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외국납소득 과세거주자 여부	여 1 / 부 2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세대주 여부	세대주1, 세대원2																			
연말정산 구분	계속근로1, 중도퇴사2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여1 / 부2 ⑤ 소 재 지(주소)	② 대 표 자(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③-2 종사업장 일련번호																		
소득자	⑥ 성 명 ⑧ 주 소	⑦ 주 민 등 록 번 호(외국인등록번호)																		
I 근무처별 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⑩-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II 비과세및감면 소득명세	⑬ 국외근로	MOX																		
	⑬-1 야간근로수당	OOX																		
	⑬-2 출산 · 보육수 당	QOX																		
	⑬-4 연구보조비	H0X																		
	⑬-5																			
	⑬-6																			
	~																			
	⑬-34																			
	⑮ 수련보조수당	Y22																		
	⑯ 비과세소득 계																			
	⑯-1 감면소득 계																			
III 세 액 명 세	구 분			⑦⑧ 소 득 세	⑦⑨ 지방소득세	⑧⑩ 농어촌특별세														
	⑦② 결 정 세 액																			
	⑦③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																		
	⑦④ 주(현)근무지																			
	⑦⑤ 납부특례세액																			
	⑦⑥ 차 감 징 수 세 액 (⑦②-⑦③-⑦④-⑦⑤)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⑦ 소득·세액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장애인 해당 시 해당 코드 기재)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 · 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 모	장 애 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인적공제 항목에 해 당하는 인원수를 적습 니다.(자녀: 명)						국세청 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					국세청												
	-					기타												
	-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공제 · 세액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충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성 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KR, 미국: US
-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함)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용 항목이 많은 경우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② 비과세소득 계"란 및 "②-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Ⅱ. 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을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⑥-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공제금액을 "⑥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한 경우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② 총급여"란에는 "⑥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⑥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③③~③⑤)"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③③~④⑥)"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계좌(⑤⑦~⑤⑨)"란과 "특별세액공제(⑥⑥~⑥⑤)"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0. ④⑦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③④ 주택자금공제(㉗+㉘), ③⑨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④⑩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㉗+㉘+㉙), ④①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④②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④③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④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11. ④⑧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③⑦ 차감소득금액에서 ④⑥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④⑦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2. ⑦⑤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 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3.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14.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⑦⑥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15. "⑦⑦ 소득·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임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되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사. 의료비(일반,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16.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7.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8. ③④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 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9. ⑦⑦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20.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
22.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 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 12 3 아	G01	⑬-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 11)	○
	소득세법 § 12 3 자	H01	⑬-9	소득령 § 12 1(법령·조례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H02		소득령 § 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 § 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 § 12 4, 8(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제복 등)	×
		H05	⑬-18	소득령 § 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⑬-4	소득령 §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⑬-4	소득령 §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⑬-22	소득령 §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⑬-23	소득령 §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⑬-6	소득령 § 12 14 (취재수당)	○
		H12	⑬-7	소득령 § 12 15 (벽지수당)	○
		H13	⑬-8	소득령 §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⑬-24	소득령 §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⑬-30	소득령 §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 § 12 3 차	I01	⑬-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 12 3 파	K01	⑬-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 § 12 3 거	M01	⑬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⑬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⑬	소득령 § 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 §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 12 3 더	O01	⑬-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 12 3 머	Q01	⑬-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 §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 12 3 서	R10	⑬-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 12 3 어	R11	⑬-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구 조특법 § 15	S01	⑬-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 16의2	U01	⑬-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 88의4⑥	Y02	⑬-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⑬-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⑬-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 12 3 자	Y22	⑬	소득령 §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감면	조특법 § 18	T01	⑬-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
	조특법 § 19	T30	⑬-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특법 § 29조의6	T40	⑬-34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
	조특법 § 30	T11	⑬-26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50%)	○
		T12	⑬-27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
		T13	⑬-32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⑬-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작성 방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illegible]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㉒ 공제 금액
				⑲ 계	㉓ 원금	㉔ 이자	

⑳ 임대인 성명 (상 호)	㉑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㉒ 유형	㉓ 계약 면적(㎡)	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㉕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㉖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②⑥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㉕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㉔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table><tr><td>거주구분</td><td colspan="2">거주자1/비거주자2</td></tr><tr><td>거주국</td><td>거주지국코드</td><td></td></tr><tr><td colspan="2">내·외국인</td><td>내국인1 /외국인9</td></tr><tr><td colspan="2">외국인단일세율적용</td><td>여 1 / 부 2</td></tr><tr><td>국적</td><td></td><td>국적코드</td></tr></table>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국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 표 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 민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 (주소)																			
소득자	⑥ 성 명			⑦ 주 민 등 록 번 호																
	⑧ 주 소																			
I 근 무 처 별 소 득 명 세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⑨ 근 무 처 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⑯ 계																			
II 비 과 세 및 감 면 소 득 명 세	⑰ 국외근로		MOX																	
	⑰-1 야간근로수당		OOX																	
	⑰-2 출산·보육수당		QOX																	
	⑰-4 연구보조비		HGX																	
	⑰-5																			
	⑰-6																			
	~																			
	⑰-34																			
	⑰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III 세 액 계 산	㉑ 근로소득		차 감 납 부 세 액																	
	㉒																			
	㉓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㉗ 소 득 세																	
	세액 공제	㉔ 외국납부	㉘ 지방소득세																	
		㉕ 납세조합 [(㉓-㉔) × 10/100]																		
	㉖ 납부특례세액		㉙ 농어촌특별세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세 무 서 장 귀하			납세조합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 1.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관리번호	
------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⑨ 임원 여부 []여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	⑪ 2011.12.31.퇴직금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정년퇴직 []정리해고 []자발적 퇴직 []임원퇴직 []중간정산 []기타
------	----------	---

퇴직 급여 현황	근무처구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⑬ 근무처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근속 연수	구분	⑬ 입사일	⑱ 기산일	⑳ 퇴사일	㉑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중복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 계산	계산내용	금액
	㉗ 퇴직소득(⑰)	
	㉘ 근속연수공제	
	㉙ 환산급여 [(㉗-㉘) × 12배/정산근속연수]	
	㉚ 환산급여별공제	
	㉛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퇴직소득 세액계산	계산내용	금액
	㉜ 환산산출세액(㉛ × 세율)	
	㉝ 퇴직소득 산출세액(㉜ × 정산근속연수/12배)	
	㉞ 세액공제	
	㉟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㊱ 신고대상세액(㉝-㉞-㉟)	

이연 퇴직 소득 세액 계산	③⑦ 신고대상세액(③⑥)	연금계좌 입금명세					③⑨ 퇴직급여(①⑦)	④① 이연 퇴직소득세 (③⑦ × ③⑧ / ③⑨)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③⑧계좌입금금액		
		④① 합 계						

납부 명세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 신고대상세액(㉞)				
	㉧ 이연퇴직소득세(㉢)				
	㉨ 차감공제세액(㉦-㉧)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의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 1을 선택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1’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사업자3’를 체크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5.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6. 소득자란의 임원 여부 ⑨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⑨에서 임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⑪ 2011.12.31.퇴직금 란에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란: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적습니다.
 8. 퇴직급여현황(⑬~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⑬ 근무처명 및 ⑭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나.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란: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퇴직소득을 적습니다.
 9. 근속연수(⑱~㉔)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⑱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 나. ⑲ 기산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 다. ⑳ 퇴사일란: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 라. ㉑ 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 마. ㉒ 가산월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10.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㉗~㉙)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㉗ 퇴직소득란: ㉕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 나. ㉘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 | 구분 \ 환산급여 | 8백만원 이하 |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의 100% |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
- 다. ㉙ 환산산출세액란: ㉕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11.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㉛~㉝)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가. ㉛ 계좌입금금액란: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나. ㉜ 퇴직급여란: ㉕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에서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㉝ 이연퇴직소득세란: ㉛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㉛ 계좌입금금액 / ㉜ 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2. 납부명세(㉞~㉟)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㉞ 신고대상세액란: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㉞ 신고대상세액을 적습니다.
 - 나. ㉟ 이연퇴직소득세란: 이연퇴직소득세로 계산된 세액(㉟)을 적습니다.
 - 다. ㊱ 차감원천징수세액란: ㉞ 신고대상세액에서 ㉟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외국인 여부
(예, 아니오)

징수 의무자 (지급자)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소득자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 소	⑩ 전 화 번 호

[illegible]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지급자)란의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가.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으며,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나. ⑪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19년도인 경우 "2019"를 적습니다.
 - 다. ⑫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 ⑬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해당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 ⑭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 ⑮ 근무일수란은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지급분기 2/4분기에 "○" 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 라. ⑯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⑰비과세소득을 제외하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지급월·근무월)합계를 적습니다.

⑰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근무월)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마. ⑱ 소득세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을 적으며, 세금은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다만, 반기별 신고 납부자는 1년에 1월 및 7월에 두 번만 납부합니다.
 - 바. ⑲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만 적습니다(소액 부정수).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 가.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때에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지급하는 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아래와 같은 시기에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 1) 1월부터 3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4월 30일까지** 발급·제출
 - 2)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7월 31일까지** 발급·제출
 - 3) 7월부터 9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10월 31일까지** 발급·제출
 - 4)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근로소득 명세 자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발급·제출
-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분기별 제출집계표]

지 급 자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 업 자 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 (주 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1. 분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⑧ 귀속연도	⑨ 지급분기 [] 1/4분기(1월~3월) [] 2/4분기(4월~6월) [] 3/4분기(7월~9월) [] 4/4분기(10월~12월)				
⑩ 일용근로자수 (⑪번에 적은 칸의 개수)	⑪ 제출자료건수 (⑫번에 적은 칸의 개수)	⑫ 과세소득 합계 (⑭번 합계)	⑬ 비과세소득 합계 (⑮번 합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⑭ 소득세 (⑯번 합계)	⑮ 지방소득세 (⑰번 합계)
명	건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적은 지급명세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⑩ 번호	⑪ 성명	⑫ 외국 인 여부	⑬ 주민등록 번호	⑭ 지급 월	귀속		⑮ 과세소득	⑯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⑪ 전화 번호				⑮ 근무 월	⑮ 근무 일수			⑰ 소득세	⑰ 지방소득세
1										
2										
3										
4										
5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3)]를 근로자별·월별(지급월·근무월)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㉔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으며, ㉕ 지급분기란은 급여를 지급한 분기에 "○"를 표시합니다.
3. ㉖ 일용근로자수란부터 ㉙ 지방소득세란까지는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의 합계 사항을 적습니다.
4. ㉚ 외국인 여부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합니다(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5. ㉛ 지급월란은 일용근로자에게 분기 내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㉜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㉝ 근무일수란은 지급월의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지급분기 2/4분기에 "○"를 표시하고, 지급월 4월, 근무월 3월, 근무일수 15일을 적습니다.
6. ㉞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㉟비과세소득을 제외하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의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㊱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8. ㊲ 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6%)] × 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지급월·근무월)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9. 소득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㉟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11.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달이 1/4분기인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 2/4분기인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 3/4분기인 경우에는 10월 31일까지, 4/4분기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합니다.
12.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어서 제3쪽에 작성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연도	지급분기	사업자등록번호									
	[1]/4, [2]/4, [3]/4, [4]/4				-			-			

⑩ 번호	⑪성명	⑫외국 인여부	⑬주민등록 번호	⑭지급 월	귀속		⑮과세소득	⑯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⑪전화 번호				⑭근무 월	⑮근무 일수			⑯소득세	⑰지방소득세
6				-						
7				-						
8				-						
9				-						
10				-						
11				-						
12				-						
13				-						

※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	--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 승계 여부	[]여 []부
의료비연금계좌	[]여 []부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계좌명세	⑨ 계좌번호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		⑪ 연금계좌평가액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⑮ 연금수령한도 ([⑪]/(11-⑭))×120%		
	2013.3.1. 전 [] 이후 []				⑯ 연금 실제 수령연차		
소득명세	⑰ 귀속연월		⑱ 퇴직분				
	인출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연금수령	⑲ 일반연금		세액이연분		전환분
			⑳ 의료비인출				
			㉑ 부득이한 사유				
	㉒ 연금외수령					㉓ 부득이한 사유 []사망 []해외이주 []요양 []개인회생·파산 []금융회사 영업정지 등	
					㉔ 연금외수령 사유 []계좌해지 []일부인출 []한도초과		
세액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㉕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㉖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㉗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㉘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㉙ 퇴직분							
기타소득	㉚ 연금외수령	15%					
납부명세	구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㉛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㉜ 퇴직소득						
㉝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② 퇴직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작성 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배우자 승계 여부란은 승계를 했으면 '여', 승계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하고, 의료비연금계좌란은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 되었으면 '여', 지정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합니다.
3.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4. 계좌명세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란: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하였고 별도로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전약정한 날을 적습니다.
 - 나. ⑪ 연금계좌평가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개시신청한 연금계좌의 경우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적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적습니다.
 - 다. ⑫ 연금수령기산연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 라.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시기가 2013년 1월 1일 전인 경우 2013.1.1. 전[]란에, 2013년 1월 1일 이후이고 2013년 3월 1일 전인 경우 2013. 3. 1. 전[]란에, 2013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이후[]란에 "√"표를 합니다.
 - 마. ⑭ 연금 수령연차란: 해당 과세연도에서 연금수령기산연도를 차감한 연차에 1(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6)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 바. ⑮ 연금수령한도란: ⑪ 연금계좌평가액/(11-⑭ 연금수령연차)×120% 을 적습니다.(⑭ 연금수령연차가 11 이상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 사. ⑯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 ⑭ 연금 수령연차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87조의3 제1항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
5. 소득명세 중 ⑱ 퇴직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의 퇴직소득을 기재합니다.
6. 소득명세 중 인출분의 작성방법은 수령 형태, 소득 원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란에 기재합니다.
 - 가. 수령 형태의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출액은 ㉑ 부득이한사유 란에 적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출액은 ㉒ 의료비인출 란에 적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과 의료비인출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출액은 ⑲ 일반연금란에 적으며, 그 외의 인출액은 ㉓ 연금외수령란에 적습니다.
 - 나. 소득원천의 구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소득원천에 따라 해당 란에 기재하며, 이연퇴직소득 중 전환분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액명세의 세율 및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각 세액란은 각 세율과 해당하는 지급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가. ㉔ 과세제외금액란: 소득명세의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한 과세제외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연금소득의 ㉕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㉙의 ㉕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에 70%(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를 곱한 수를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 중 연금수령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 다. 연금소득의 ㉖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란: 가입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에 해당하는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라. 퇴직소득의 ㉗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㉙의 ㉕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 마. 퇴직소득의 ㉘ 퇴직분란: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⑱ 퇴직분의 금액을 적고 세액 란은 부표㉙의 ㉕차감원천징수세액 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 바. 기타소득: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8. 납부 명세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가. 지급액 란: ㉚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는 소득명세의 연금수령의 일반연금이면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연금소득의 무조건 분리과세 란은 세액명세의 연금소득 지급액 합계에서 종합과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으며, ㉛ 퇴직소득, ㉜ 기타소득은 세액명세의 소득별 지급액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 나. 소득세 란은 세액 명세의 소득별 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고, 지방세 란은 해당하는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으며, 세액계 란은 소득세와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9. 부표 ㉙, ㉚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원)

①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⑦ 당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당기잔액						

작성 방법

①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 ① 과세제외금액 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① 근무처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퇴직급여										
근속 연수	구 분	④ 입사일	⑤ 기산일	⑥ 퇴사일	⑦ 지급일	⑧ 근속월수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⑬ 정산퇴직소득(③)										
	⑭ 근속연수공제										
	⑮ 환산급여 [(⑬-⑭) × 12배/정산근속연수]										
	⑯ 환산급여별공제										
	⑰ 퇴직소득과세표준(⑮-⑯)										
퇴직소득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⑱ 환산산출세액(⑰ × 세율)										
	⑲ 퇴직소득 산출세액(⑱ × 정산근속연수/12배)										
	⑳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㉑ 신고대상세액										
	㉒ 이연 퇴직소득세										
	㉓ 차감원천징수세액(㉑-㉒)										
이연 세액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㉔ 합 계										

작성방법

②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㉓ 세액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계산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 득세 증가액	③ 이연퇴직소득	④ 이연퇴직 소득세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	⑨ 이연퇴직 소득세 잔액
전환분										
세 액 이 연 분	증가 없음									
	이연 퇴직 소득 증가 회차	1								
		2								
		3								
		4								

작성 방법**㉓ 세액이연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1. 세액이연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증가 없음’ 행에만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에서 해당 연도에 이연 퇴직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2.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및 이연퇴직소득 증가 회차는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은 입금 및 이체되는 이연퇴직소득금액과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이 1회차 증가한 이후 2회차 증가 전까지 지급된 이연퇴직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⑤~⑨에 해당하는 금액은 1회차 행에 적고, 2회차, 3회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③ 이연퇴직소득란과 ④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을 적고,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이연퇴직소득 입금 회차의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과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에 각각 해당 입금 회차의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과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을 더한 값을 적습니다.
4.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란은 같은 행의 ④ 이연퇴직소득세를 ③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 단위로 적습니다.
5.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란은 연금계좌에서 이체 및 인출된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적습니다.
6.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란은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에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7. ⑧ 이연퇴직소득 잔액은 ③ 이연퇴직소득에서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이연퇴직소득세 잔액은 ④ 이연퇴직소득세에서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지 급 자	① 상호(법인명)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1. 반기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⑧ 귀속연도	년	⑨ 지급 시기	[] 상반기(1월 ~ 6월)	[] 하반기(7월 ~ 12월)
⑩ 근로자 총 인원		⑪ 과세소득 (⑩번 합계 + ⑫번 합계)		
명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일련 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⑯ 거주지국	⑮ 근로기간	⑰ 급여 등	⑱ 인정상여
	⑬ 성명	⑮ 거주자구분	⑰ 거주지국코드			
1				-		
2				-		
3				-		
4				-		
5				-		
6				-		
7				-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작성방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분 : 1월 31일까지 제출
 3. ⑧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 ⑨ 근무 시기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반기에 [√]를 표시합니다.
 4. ⑪ 과세소득란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⑬ 급여 등과 ⑭ 인정상여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 ⑮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6. ⑯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적습니다.
 7. ⑰ 거주지국과 ⑱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8. ⑲ 근무기간은 월일로 기재합니다. (예: 01.01. - 06.30.)
 9. ⑳ 급여 등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고, ㉑ 인정상여란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 ※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유의사항
- 상반기 중 퇴사한 근로자에게 상반기 근무에 대한 소득을 하반기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되, ⑲ 근무기간란에 해당 소득의 지급일을 적습니다. (예: 2020년 6월 30일 퇴사한 자에게 2020년 6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0년 7월 20일에 지급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2020.07.20. - 2020.07.20.)
 - 근무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예: 2020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미제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부표
(근로소득)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⑧ 귀속연도	⑨ 근무시기			③ 사업자등록번호		
	[] 상반기 [] 하반기					

일련 번호	⑫ 주민등록번호	⑭ 내·외국인	⑯ 거주지국	⑮ 근무기간	⑯ 급여 등	⑰ 인정상여
	⑬ 성명	⑮ 거주자구분	⑰ 거주지국코드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지급자 보관용 [] 지급자 제출용)

귀속	년	[]상반기
		[]하반기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소)	④ 반기 소득인원	⑤ 반기 총 지급액 (⑫번 합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⑥ 업종 코드	⑦ 소득자 성명(상호)	⑧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⑨ 내·외국인	⑩ 거주지국	⑫ 지급총액
					⑪ 거주지국코드	
1						
2						
3						
4						
5						
6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이 서식은 해당 연도의 반기에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고 우리나라 거주자인 사람에게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경우에만 작성하며, ⑩ 거주지국은 "한국" ⑪ 거주지국코드는 "KR"을 적습니다.
※ 사업한 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예: 2020년 12월 사업에 대한 소득을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미제출)
- 건별 소액 부정수되는 건수에 대한 지급 금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 ④ 반기 소득인원란은 ⑦ 소득자 성명의 인원을 적어 제출합니다.
- ⑥ 업종코드란에는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아래의 업종코드를 적어야 합니다.
- ⑨ 내·외국인란에는 내국인인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인 경우에는 "9"를 적습니다.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업종코드	종목
940100	저술가	940305	성악가	940903	학원강사	940909	기타자영업	940915	목욕관리사
940200	화가관련	940306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904	직업운동가	940910	다단계판매	940916	행사도우미
940301	작곡가	940500	연예보조	940905	봉사료수취자	940911	기타모집수당	940917	심부름용역
940302	배우	940600	자문·고문	940906	보험설계	940912	간병인	940918	퀵서비스
940303	모델	940901	바둑기사	940907	음료배달	940913	대리운전	940919	물품배달
940304	가수	940902	꽃꽂이교사	940908	방판·외판	940914	캐디	851101	병의원

귀속	년	[]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자보관용 []지급자제출용)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⑥ 업종 코드	⑦ 소득자 성명(상호)	⑧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⑨ 내·외국인	⑩ 거주지국	⑫ 지급총액
					⑪ 거주지국코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4서식(3)] 삭제 <2019. 12. 3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① 원천징수의무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성명)	②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반기 소득인원	⑤ 반기 총 지급액 (⑫번 합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⑥ 소득 구분코드	⑦ 소득자 성명(상호)	⑧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⑨ 내·외국인	⑩ 거주지국	⑫ 지급총액
					⑪ 거주지국코드	
1						
2						
3						
4						
5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해당 연도의 반기에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인 개인에게 사업·선박 등 임대·사용료·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사업, 임대 등의 귀속연도가 지난 후 지급하는 소득은 제출대상이 아닙니다.(예: 2020년 12월 사업에 대한 소득을 2021년 1월에 지급한 경우 미제출)

2. ② 및 ⑧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기재번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또는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3. ④ 반기 소득인원은 ⑦에 적힌 인원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⑥ 소득구분코드란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소득	사업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인적용역소득	사용료소득
구분코드	40	41	42	61

5.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1"을, 외국인의 경우에는 "9"를 각각 적습니다.

6. ⑩ 거주지국과 ⑪ 거주지국코드는 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7. ⑫ 지급총액은 건별 소액 부정수(세액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금액을 적어 제출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비거주자의 사업·선박등임대·
사용료·인적용역소득)
([]지급자보관용 []지급자제출용)

귀속	년	[]상반기
		[]하반기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반기 소득내용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주인)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⑥ 소득 구분코드	⑦ 소득자 성명(상호)	⑧ 주인(사업자) 등록번호	⑨ 내·외국인	⑩ 거주지국	⑫ 지급총액
					⑪ 거주지국코드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연금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거 주 지 국		⑤ 거주지국 코드	
소득	⑥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⑦ 대 표 자(성 명)			
지급자	⑧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 소득유형 []퇴직연금 []보험연금 []사회보장연금 []기타				

(단위: 원)

⑪ 지급일	⑫ 지급액	⑬ 세율	⑭ 원천징수할 세액	⑮ 비과세·면제세액

⑯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⑰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⑱ 대리인 유형		[]납세관리인	[]기타대리인
	⑲ 성명 또는 법인명			
	⑳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㉑ 주소 또는 소재지			
	㉒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2.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해당되는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 []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않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봄) 이상에 해당
- []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1-1.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 일반 현황

① 명칭	② 대표자 성명	③ 설립연월일	④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⑤ 전화번호	⑥ 주소		
⑦ 등록·승인된 국가	⑧ 국가코드	⑨ 등록·승인의 근거법령	⑩ 등록·승인한 금융감독기관
⑪ 유형 []법인 []신탁 []파트너십 []기타()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기준일: 년 월 일]

⑫ 국가 등	총투자 금액·비율		⑮ 실질귀속자 수	⑯ 적용세율(%)		
	⑬ 금액(단위:)	⑭ 비율(%)		소득	소득	소득
⑰ 합계		100%				

본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 또는 제207조의8제3항 각 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 또는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금융감독기관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투자설명서 2.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

2.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⑮ 명칭	⑮ 대표자 성명	⑮ 설립연월일	⑮ 투자등록증 번호 등
⑮ 전화번호	⑮ 주소		
⑮ 설립지국	⑮ 국가코드		
⑮ 유형 []법인 []신탁 []파트너십 []기타()			

본인은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5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207조의8, 「법인세법」 제98조의4·제98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38조의7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국내원천소득 제한세를 적용신청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신청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이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및 실질귀속자 명세서를 작성하였고 위 신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거나 비과세·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실질귀속자 명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대리인	㉗ 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그 외 대리인	㉘ 성명 또는 법인명	㉙ 사업자(주인)등록번호
	㉚ 주소 또는 소재지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이 신고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이 신고서는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실질귀속자들의 구성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함께 적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두 가지 요건(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담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하여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가. 국외투자기구의 명칭, 주소, 거주지국, 유형, 전화번호, 적용세율 등이 변경된 경우
나. 원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로 신고했던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 수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다. 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3년이 지난 경우
- ①, ⑩ 명칭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 ②, ⑩ 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인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 ③, ⑩ 설립연월일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 ④, ⑩ 투자등록증 번호란에는 국외투자기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외국인 투자등록증 번호(IRC No.)를 적되,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⑩ 전화번호란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⑥, ⑩ 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은 적지 않습니다.
- ⑦ 등록·승인된 국가란과 ⑭ 설립지국란의 국가명 또는 ⑧, ⑩ 국가코드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⑨ 등록·승인의 근거법령란에는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기관에 공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령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⑩ 등록·승인한 금융감독기관란에는 계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공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승인을 관할하는 금융감독기관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⑪, ⑩ 유형란에는 국외투자기구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법인인 경우라도 거주지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파트너십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파트너십에 '√' 표시를 합니다.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에 해당 유형을 적습니다.
- '1-2. 국가별 총투자금액 등 현황' 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을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여 적습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 당시 국가별 분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반기의 전반기 말일 또는 신고서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의 국가별 분류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⑫ 국가 등란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을 적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ZZ'를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실질귀속자들은 거주지 국가별로 분류하지 않고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국외투자기구 명칭을 적고 실질귀속자 수는 1로 적습니다.
실질귀속자의 거주지 국가의 수가 서식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형식으로 별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⑬ 적용세율란에는 실질귀속자들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한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0(면제)')을 적되, 해당 조세조약의 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인 경우 또는 거주지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2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다. 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된 실질귀속자 명세의 ⑩ 징수세율의 합계(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투자기구 신고서의 ⑬ 적용세율란에 적힌 소득별 적용세율의 합계를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 ⑭ 합계란에는 ⑬ 총투자금액, ⑮ 실질귀속자 수를 각각 합산하여 적되, ⑬ 적용세율의 합계는 소득의 종류별로 각 국가별 총투자비율에 국가별 적용세율[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 영(0)]을 곱한 비율(투자자 중 다른 국외투자기구가 있는 경우 해당 투자비율에 적용세율을 곱한 비율을 포함합니다)을 모두 합산하여 적습니다. ⑭ 총투자비율의 합계는 항상 100%이어야 합니다.
- ⑭ 국가별 총투자비율 또는 ⑬ 적용세율의 합계가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무한소수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한 비율 또는 세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예: XX.XXXX%)
- ⑰~⑳란에는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그 밖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고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소득지급자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임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65세이상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기타 계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계																
	기 타 계																
	국세청																
	기타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50①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50①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50①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50①3마)	8

-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돌봄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장애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III.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기타 대출								
			10년 ~ 15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법정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기부금이월액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IV.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17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 등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8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 등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9년 출자·투자분		조합 등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선불카드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도서·공연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 · 공제명세		세액감면 · 공제 명세						
V. 세액 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정무간 협약 []기술도입계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또는	
			연금저축		납입금액				15%	
				연금계좌 계						
		보 험 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의 료 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교 육 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 부 금	정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25%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기부금액				또는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액				30%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지출액			10% 또는 12%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2. 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결정세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주택 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17년 출자·투자분	10%(100%, 5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2018년 출자·투자분	10%(100%, 70%,30%)					
2019년 출자·투자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③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기재합니다)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table><tr><td>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td><td>최저사용금액 × 15%</td></tr><tr><td>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td><td>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td></tr><tr><td>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td><td>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40%</td></tr></table>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40%							
		4. 공제한도: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은 금액(총급여 7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백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②+③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각 항목별 연간 1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연금계좌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 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2.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다만,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입니다. 3.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4.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7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사.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학금, 수업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비, 국외교육비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3.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① 법정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②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2%)를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의사항

-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3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병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 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마.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의 경우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 ※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작성 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2014년 이전 가입), 주택청약종합저축(2015년 이후 가입) 및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과 조합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⑳ 공제 금액
				㉑ 계	㉒ 원금	㉓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㉔ 임대인 성명 (상 호)	㉕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㉖ 유 형	㉗ 계약 면적(㎡)	㉘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㉙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㉚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㉖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㉙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작성 방법

-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㉑, ㉖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㉙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	--	--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소 득 · 세 액 공 제 명 세 (년도)									
④ 기본공제 대상자					⑤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공제대상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결혼 후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출산· 입양자
본 인			-						
배 우 자			-						
부양가족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기본공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기본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④란에 적습니다.
 - 가.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 나. 부양가족
 - 1) 연금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습니다. 다만,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가) 직계존속: 60세 이상인 경우
 - 나) 직계비속·입양자: 20세 이하인 경우,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다)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마)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
 - 2) 부양가족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형제자매·배우자 또는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부모·자녀 등은 적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 등은 기본공제대상자 중 경로자, 장애인, **7세 이상 자녀** 또는 출산·입양자가 있거나 연금소득자 본인이 부녀자 세대주, 한부모 세대주인 경우에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하는 것으로서 ⑤란에 대상 여부에 "○"표시를 합니다.
 - 가.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나. 장애인공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다. 부녀자공제: 연금소득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함)만 5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 라. 한부모 가족 소득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소득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마. 출산·입양자(자녀세액공제): 출산·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입양자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합니다.
3. 공제대상 항목 중 작성할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장 애 인 증 명 서

1. 증명서 발급기관

① 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성명)														
④ 소 재 지														

2. 소득자 (또는 증명서 발급 요구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3. 장애인

⑧성 명		⑨주민등록번호								-				
⑩ 소득자와의 관계	의	⑪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	☐ 영구 (. . .부터) ☐ 비영구(. . .부터 . . .까지)											
⑫장 애 내 용	제 호	⑬용 도	소득공제 신청용											

위 사람은 「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함(또는 소득공제 받으려는 과세기간 중에 장애인이었으나 치유가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진 료 자

(서명 또는 인)

발 행 자

(서명 또는 인)

귀 하

작 성 방 법

⑪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란을 작성할 때 비영구적 장애로서 장애예상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말일을 장애예상기간의 종료일로 적습니다.

⑫ 장애내용란에는 다음의 해당 번호를 적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1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3.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3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중 단순경비율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 제3쪽 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 제3쪽 ❷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❷대리구분은 ①-④중 한가지만 선택).
- 제5쪽 ~ 제11쪽 ❸ ~ ❹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 제13쪽 ❺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❻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❻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제15쪽 ❼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제19쪽 ❽ 세액감면명세서, ❾ 세액공제명세서, ❿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 제21쪽 ⓫ 가산세명세서와 ⓬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제3쪽 ④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⑱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⑲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 제3쪽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을 적습니다.
-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접 수 자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신청서 ()	
3. 합계잔액시산표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접수일(인)
4. 조정계산서 ()	9. 그 밖의 첨부서류 ()	
5. 소득공제신고서 ()		

①~④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⑨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⑭, ⑫, ⑪, ⑩, ⑧, ⑥, ④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되,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③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①기장 ②조정 ③신고 ④성실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⑬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⑭ 소득공제란: 제15쪽 ⑪ 소득공제명세서의 ⑫ 소득공제합계에서 ⑬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⑮ 세율란·⑯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⑰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경우에는 제27쪽 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매매업자가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 ⑳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⑳ 세액감면란·㉑ 세액공제란: 제19쪽 ㉒ 세액감면명세서의 ⑤ 세액감면 합계 또는 ㉓ 세액공제명세서의 ⑥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㉔·㉕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3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㉔ 가산세는 제21쪽 ㉖ 가산세명세서의 ⑦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㉚·㉛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㉚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고,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㉛ 추가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12. ㉜·㉝ 기납부세액란: 제21쪽 ㉞ 기납부세액명세서의 ⑪란 및 ㉟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㊱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⑥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㉚ 납부(환급)할 총세액란: ㉚ 합계 금액에서 ㉜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㉚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적습니다.
14. ㉜·㉝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㉜년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㉝년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㉞ 분납할세액란: ㉚ 납부할 총세액에서 ㉜·㉝ 납부특례세액을 차감·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난에 적습니다.
15. 농어촌특별세란: ㉟ 과세표준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⑱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㉚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㉚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㉜+㉝-㉚)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7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8년 이후			
		종합소득세		자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자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이하		6%		0-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5%	108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2-4%	522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5%	1,49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8%	1,940천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4-0%	2,940천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4-0%	2,540천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4-2%	3,540천원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	---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 · 외국인	내 국인1 / 외국인9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분리과세 주택임대	여 1 / 부 2
거주자국	거주자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⑤ 사업장 전화번호	
④ 주소지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⑧ 기 장 의 무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③비사업자	
⑨ 신 고 유 형	⑪자기조정 ⑫외부조정 ⑬성실신고확인 ⑭간편장부 ⑮추계-기준을 ⑯추계-단순을 ⑰분리과세(주택임대)⑱ 비사업자	
⑩ 신 고 구 분	⑩정기신고 ⑪수정신고 ⑫경정청구 ⑬기한후신고 ⑭추가신고(인정상여)	

② 환급금 계좌신고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⑪ 금융기관/체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	--------

③ 세 무	⑬성 명	⑭사업지등록번호	-	⑮전화번호
대리인	⑯대리구분	⑰기장 ⑱조정 ⑲신고 ⑳성실확인 ㉑관리번호	-	㉒조정반번호

④ 세액의 계산

구 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총 합 소 득 금 액	⑮			
소 득 공 제	⑯			
과 세 표 준(⑮-⑯)	⑰		⑴	⑵
세 율	⑱		⑶	⑶
산 출 세 액	㉑		⑷	⑷
세 액 감 면	㉒		⑸	
세 액 공 제	㉓		⑹	
결정세액	㉔		⑺	⑸
분리과세주택임대소득	㉕		⑻	⑹
합 계(㉔+㉕)	㉖		⑽	⑺
가 산 세	㉗		⑾	⑺
추 가 납 부 세 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㉘		⑿	⑽
합 계(㉖+㉘+㉘)	㉙		⑿	⑾
기 납 부 세 액	㉚		⑿	⑾
납 부(환급) 할 총 세 액(㉙-㉚)	㉛		⑿	⑾
납 부 특 례 세 액	㉜		⑿	⑾
차 감	㉝		⑿	⑾
가 산	㉞		⑿	⑾
분 납 할 세 액	㉟		⑿	⑾
2개월 내	㊱		⑿	⑾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㉛-㉜+㉝-㉞)	㊲		⑿	⑾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접수(영수)일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⑤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 · 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⑤ 이자소득명세서

[illegible]

⑥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법인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5백만원(Gross-Up 대상)~~, 기타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각각 5백만원과~~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각각 5백만원(고배당기업)과~~ 5백만원(기타 배당소득)을 적음
-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⑥ 배당소득명세서

[illegible]

⑦ 사업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31·32·40·41)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1
 -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 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1
2.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3. ③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1", 국외인 경우 "9"로 구분하여 적고 소재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국세정보→국제조세정보→국제조세자료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KR, 미국:US
4. ⑥ 기장의무: 사업장별로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⑦ 신고유형코드란: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의 작성자 또는 소득금액계산서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서 신고 시 조정구분에 따라 11코드 또는 12코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가. 자기조정(자기가 직접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1
 - 나. 외부조정(세무대리인이 조정계산서를 작성한 경우): 12
 - 라. 성실신고확인: 14
 - 마.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20
 - 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1
 - 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32
6. ⑧ 주업종코드란: 해당되는 업종 코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업종코드를 적습니다.
7. ⑨ 총수입금액란 및 ⑪ 소득금액란: 비과세사업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37호의3서식)를 작성한 후 같은 서식의 ⑰ 과세대상금액란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의 경우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란에, 배분받은 결손금을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8. ⑩ 필요경비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제25쪽 ⑮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⑯ 필요경비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⑮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⑳ 비교소득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⑨ 총수입금액에서 ⑪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9. ⑪ 소득금액란: ⑨ 총수입금액에서 ⑩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제25쪽 ⑮ 추계소득금액계산서의 ㉑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과세기간개시일란·⑬ 과세기간종료일란: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일은 해당 연도 "1. 1."로 적고, 과세기간종료일은 "12.31."로 적습니다. 신규사업자나 폐업자는 개업일 또는 폐업일을 적고,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의 동업 개시일과 탈퇴일을 적습니다.
11. ⑭ 대표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인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⑮ 특수관계인란은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른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3.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⑯ ~ ⑲): 부동산 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과 주택 외 임대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 수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를 적으며, ⑰ 수입금액, ⑱ 필요경비 및 ⑲ 소득금액은 ⑧ 주업종코드에 따라 작성한 ⑨ 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및 ⑪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주업종 및 부업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적습니다.
14. ⑳ 일련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15. ㉑ 상호(성명)란·㉒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6. ㉓ 소득세란·㉔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이 징수한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으며, 원천징수자 또는 납세조합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⑦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 상 호										
⑤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 기 장 의 무										
⑦ 신 고 유 형 코 드										
⑧ 주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⑩ 필 요 경 비										
⑪ 소 득 금 액(⑨-⑩)										
⑫ 과 세 기 간 개 시 일										
⑬ 과 세 기 간 종 료 일										
⑭ 대 표 공동사업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 분	⑩주택수(개)	⑪수입금액	⑫필요경비	⑬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 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⑭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⑮ 상호(성명)	⑯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⑰ 소득세	⑱ 농어촌특별세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7) 「소득세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1) 61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정하는 종교인소득: 67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5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50~700만원 이하	350만원+35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⑧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이자소득금액란: 제5쪽 ⑤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 나. 배당소득금액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⑧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 과 '31' 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 마.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 '40', '41'인 소득의 ⑪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 ① 발생과세기간란·② 발생금액란: 직전 10개 과세기간(2008년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차례대로 적습니다.
-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⑫소급공제를 받으려는 이월결손금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손금을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 ⑦ 잔액란: 이월결손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9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별 소 득 금 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 손 금 액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손금공제 후 소 득 금 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 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 계 (종합소득금액)					

10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 동 산 임대업외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⑦)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년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⑨~⑩)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⑨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⑩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⑪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않음)

다. ⑭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⑯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은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⑰~⑳)는 관련 제목(조문)을 ⑰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⑱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⑳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㉑ 코드란은 적지 않습니다.

7. ㉒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㉑-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㉑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11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 본 인		연 금 보 험 료 공 제	⑨ 국 민 연 금		
		② 배 우 자			⑩ 공무원·군인·사립 학교 교직원·별정우체 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명)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 자 비 용 공 제		
	추 가 공 제	④ 경 로 우 대 자(명)		특 별 공 제	⑫ 보험료 공제		
		⑤ 장 애 인(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⑥ 부 녀 자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⑦ 한 부 모 가 족			⑮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특별 공제 합계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⑯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㉑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 + ⑮ + ㉑)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11-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 11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 적 공 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 금 보 험 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연금소득금액 한도) 한도	×
특 별 소 득 공 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주 택 자 금 주 택 임 차 차 입 금 원 리 금 상 환 액 (㉠)	(㉠+㉡) 연 3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연 500만원(연 1,800만원 한도)	○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벤처기업 등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분은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연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300만원(총급여1.2억 초과자는 200만원), 총급여 20%] + 100만원(전통시장) + 100만원(대중교통)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11-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 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①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④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⑥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근로자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⑧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①~⑦)		⑨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12 세액감면명세서 및 13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① ⑤ 해당 제목(법 조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제목(「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적습니다.
 -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3쪽 ⑪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④ 배당세액공제의 ④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부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⑫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④ 배당세액공제의 ④③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2명 이하: 1명당 15만원(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4명: 30만원+(30만원×2명)=90만원)
 -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 × 12%(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15%)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난임시술비 20%),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코드 20, 42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란에 적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기부금종류별 공제한도]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한도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합계액)] × 30%
 -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아래 1과 2의 합계액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10%
 -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지정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30%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13만원),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 교육비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7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⑥ 배당소득명세서의 ⑥대상금액의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5%, 세액공제액 2천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 ③ 세액감면·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4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
-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 + 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2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목(법 조문)	② 코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13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	적용률 (㉡)	③ 세액공제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전 자 계 산 서 발 급 전 송 세 액 공 제					
재 해 손 실 세 액 공 제					
근 로 소 득 세 액 공 제					
자 녀 세 액 공 제	(기본공제)자녀 명				
	(출산·입양 명)				
연금계좌 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12%		
	퇴 직 연 금		(15%)		
	연 금 저 축				
특 별 세 액 공 제	보험료	보 장 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 료 비		15%		
	교 육 비		(20%)		
	기 부 금	법정기부금	15%		
		지정기부금	(30%)		
	표 준 세 액 공 제				
납 세 조 합 세 액 공 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0 만 원 이 하		100/110		
기 부 금	1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코배당기업-주식의-배당소득-세액공제			5%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14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조문)	② 코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준비금 환입액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③ 연도	④ 금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15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무신고가산세·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 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복식 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적용합니다.
3.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⑪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18. 1. 1.이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의 경우 '19.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은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경감합니다.
4.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⑨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⑩ 사업용계좌 미개설·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개설·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개설·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⑩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8. ④ 보고불성실가산세·⑤ 증빙불비가산세·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10.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습니다.

16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습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 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습니다.
3. ④·㉑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⑤ 이자소득란: 제5쪽 ⑤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 ⑨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⑦·㉒ 사업소득란: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 ㉓란의 합계액과 ㉔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7. ⑧·㉓ 근로소득란: 제11쪽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8. ⑨ 연금소득란·⑩ 기타소득란: 제11쪽 ⑨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⑧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⑮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20/100	
②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10/100	
③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		25/100,000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 납 부 (환 금) 세 액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미 제 출 (불 명)	지 급 금 액	0.5/100(0.25/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0.25/100)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계 합 산 계 서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빙불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	미 제 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동사업장등록공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기장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업용계좌미신고등	미 개 설·미 신 고	수 입 금 액 등		0.2/100	
		미 사 용 금 액		0.2/100	
⑪ 신용카드거부등	거 래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	발 급 거 부·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발 급 금 액		20/100(10/100)	
	영수증 불성실발급	불성실기재금액		2/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 작 성 등 금 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 출 세 액		5/1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 당 가 능 유 보 소 득 금 액		0.5/100	
⑰ 합 계					

⑯ 기납부세액명세서

구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부 과 세 액		④		㉑	
원 천 징 수 세 액 및 납 세 조 합 징 수 세 액	이 자 소 득	⑤		㉒	
	배 당 소 득	⑥		㉓	
	사 업 소 득	⑦		㉔	
	근 로 소 득	⑧		㉕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㉖	

1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 ③, 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⑩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2 또는 3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5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6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6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 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6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6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⑭·⑮·⑯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9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⑳·㉑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6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㉒, ㉓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㉒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㉓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⑰·⑱·㉔ 소득공제란: 제15쪽 11 소득공제명세서의 ㉔ 소득공제합계에서 ㉕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㉖·㉗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11. ㉘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㉙·㉚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㉛ 배당세액공제: ㉜란은 ㉛와 (㉛-㉞)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1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③② $[(②+⑦) \times (14/100)]$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③③ $[③ \times (25/1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③④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⑬ 배당가산액		③⑤ 소득공제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③⑥ 과세표준(③④-③⑤)	
⑮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⑫+⑬+⑭)		③⑦ 기본세율	
⑯ 소득공제		③⑧ 산출세액	
⑰ 과세표준(⑮-⑯)		③⑨ 종합소득산출세액(③②+③③+③⑧)	
⑱ 기본세율			
⑲ 산출세액			
⑳ $[⑪ \times (14/100, 9/100)]$			
㉑ 비교산출세액계(⑲+㉐)			
㉒ 비영업대금이익 $[(①+③) \times 25/100]$			
㉓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⑩ - (①+③)]$			
㉔ $[㉓ \times (14/100, 9/100)]$			
㉕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㉖ 소득공제			
㉗ 과세표준(㉕-㉖)			
㉘ 기본세율			
㉙ 산출세액			
㉚ 비교산출세액 계(㉒+㉔+㉙)			
㉛ 종합소득산출세액(㉑와 ㉚ 중 큰 금액)			
4 배당세액공제			
㉜ $[⑬와 (㉛ - ㉚) 중 작은 금액]$			

18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㉔란부터 ㉗란까지 및 ㉑란부터 ㉒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 32)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⑧ 업종코드·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항목에 작성합니다.
- 매입비용(㉔~㉕)과 임차료(㉖~㉗)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㉔·㉕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㉖·㉗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㉕·㉗란에 적습니다.
-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㉑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㉑란에 적습니다.
- ㉑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㉒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㉑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㉑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㉑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times\frac{1}{2}$)
- ㉑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 ㉑ 금액란: 1에서 ㉑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㉑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㉑ 비교소득금액란: ㉑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2, 간편장부 대상자: 2.6)"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㉑ 소득금액란: ㉑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㉑란의 기준소득금액과 ㉑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8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계()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 준 소 득 금 액	필 요 경 비	⑩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⑭)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 + ⑪ - 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 ⑭)			
		⑯ 필요경비 계 (⑬ + ⑮)				
⑰ 기준소득금액 (⑨ - ⑯) ("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 교 소 득 금 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⑱ 단순경비율(%)				
		⑲ 금액[⑨ × (1 - ⑱)]				
	⑳ 비교소득금액 (⑲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					
㉑ 소득금액 (⑰ 또는 ㉒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 · 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㉒		㉓		㉔		㉕	
임 차 료	㉖		㉗		㉘		㉙	
인 건 비	㉚		㉛		㉜		㉝	
계(㉔ = ㉖)	㉞		㉟		㊱		㊲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㉒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7쪽의 ⑧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나. ㉓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다. ㉔ 필요경비란: ㉒ 총수입금액에서 ㉓ 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제15쪽의 ㉑ 소득공제합계에서 ㉑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마. ㉖ 과세표준란: ㉒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바. ㉗ 산출세액란: ㉖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㉒~㉓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나.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㉖ 과세표준란: ㉒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㉗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 가. ㉒~㉓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나.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다. ㉖ 과세표준란: ㉒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㉗ 산출세액란: ㉖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⑪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가. ㉒~㉓란: 매매가액(㉒)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㉓)를 빼서 소득금액(㉒)을 계산합니다.
 - 나.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 ㉖ 과세표준: ㉒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라. ㉗ 산출세액란: ㉖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㉘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㉗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㉗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 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 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㉒ 총 수 입 금 액 (주택 등 매 매 가 액)				
㉔ 필 요 경 비				
㉖ 장기보유특별공제				
㉘ 소 득 금 액				
㉚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㉜ 과 세 표 준				
㉞ 세 율				
㉠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누진+20%세율 적용자산	⑧ 40%세율 적용자산	⑨ 50%세율 적용자산	⑩ 60%세율 적용자산	⑪ 70%세율 (미등기자산)
㉒ 총 수 입 금 액 (주택 등 매 매 가 액)							
㉔ 필 요 경 비							
㉖ 장기보유특별공제							
㉘ 소 득 금 액							
㉚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㉜ 과 세 표 준							
㉞ 세 율							
㉠ 산 출 세 액							

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 ③, 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⑫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㉔ 또는 ㉕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㉔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㉕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㉔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㉔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㉔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 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㉔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배당가산액란: 제7쪽 ㉔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⑭·⑮·⑯·㉔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㉔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㉔·㉕·㉖·㉗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㉔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㉔, ㉕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㉔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㉕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⑰·⑱·㉔ 소득공제란: 제15쪽 ㉔ 소득공제명세서의 ㉔ 소득공제합계에서 ㉔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㉔·㉕·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 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율(9/100)을 적용합니다.~~

11. ㉔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㉔·㉕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㉔ 배당세액공제: ㉔란은 ⑬와 [(㉔)-(㉔와 ㉔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㉔·㉕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㉔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자용)의 ㉔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㉔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㉔·㉕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㉔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자용)의 ㉔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㉔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1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④ 위 ①·②·③ 외의 이자소득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⑤ 이자소득 합계(①+②+③+④)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④② [(②+⑦)×(14/100)]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④③ [③×(25/1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④④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⑬ 배 당 가 산 액		④⑤ 종합소득금액(④④)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④⑥ 소 득 공 제	
⑮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⑫+⑬+⑭)		④⑦ 과 세 표 준(④⑤-④⑥)	
⑯ 소 득 공 제		④⑧ 기 본 세 율	
⑰ 과 세 표 준(⑮-⑯)		④⑨ 산 출 세 액	
⑱ 기 본 세 율		⑤① 비교산출세액 계(④②+④③+④⑨)	
⑲ 산 출 세 액		⑤②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④⑦-⑤①)	
⑳ [(⑪×(14/100, 9/100)]		⑤③ 기 본 세 율	
㉑ 비교산출세액 계(⑲+㉑)		⑤④ 산 출 세 액	
㉒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⑤⑤ 주택등매매차익세액	
㉓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⑰-㉒)		⑤⑥ 비교산출세액(④②+④③+⑤④+⑤⑤)	
㉔ 기 본 세 율		⑤⑦ 종합소득산출세액(⑤①와 ⑤⑥ 중 큰 금액)	
㉕ 산 출 세 액		4 배당세액공제액 ⑤⑧ ⑬와 [(④①)-(③⑥와 ④① 중 큰 금액)] 중 작은 금액	
㉖ 주택등매매차익세액			
㉗ 비교산출세액(㉑+㉕+㉖)			
㉘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			
㉙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⑩-(①+③)]			
㉚ [(㉙×(14/100, 9/100)]			
㉛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㉜ 소 득 공 제			
㉝ 과 세 표 준(㉛-㉜)			
㉞ 기 본 세 율			
㉟ 산 출 세 액			
㊱ 비교산출세액 계(㉘+㉚+㉟)			
㊲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㉝-㉞)			
㊳ 기 본 세 율			
㊴ 산 출 세 액			
㊵ 비교산출세액 계(㉖+㉘+㉚+㊴)			
㊶ 종합소득산출세액 (㉑·㉗·㉙·㊵ 중 큰 금액)			

㉑ 주식매수선택권 분납할세액 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1.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5. ⑫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6. ⑬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7. ⑮ 1차년도 및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8. ⑲ 잔액은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⑮ 1차년도 ⑯ 2차년도 ⑰ 3차년도 ⑱ 4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㉑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

①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익 $\{⑦ \times (⑧ - ⑤)\}$
		③ 일자	④ 주식 수	⑤ 주당 행사가액	⑥ 일자	⑦ 주식 수	⑧ 주당 시가	

2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구 분	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포함	⑪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제외	⑫ 납부특례세액 $(⑩ - ⑪) \times 4/5$
㉓ 근로(기타)소득금액			
㉔ 종합소득금액			
㉕ 소득공제			
㉖ 과세표준			
㉗ 세율			
㉘ 산출세액			
㉙ 세액감면			
㉚ 세액공제			
㉛ 결정세액			

3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⑬ 발생과세기간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납부액				⑮ 잔 액 $(⑭ - ⑮ - ⑮ - ⑮ - ⑮)$
		⑮ 1차년 도	⑯ 2차년 도	⑰ 3차년 도	⑱ 4차년 도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㉑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㉒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7.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8.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9. ⑨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㉓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illegible]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 (⑦ × ⑧)
	19%	

㉓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별·임차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 ④ 공동소유 여부란: 공동소유 임대주택인 경우 "여"에 체크(√)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적으며, 단독소유인 경우 "부"에 체크합니다.
3. ⑥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 나. 「소득세법」 제169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
 -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4. ⑫ 월세 수입금액란: 연간 월세 수입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5. ⑬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란: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의 ⑮총수입금액산입금액을 적습니다.
6. ⑮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7. ⑯ 공제금액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left(\frac{\text{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400\text{만원} \right) + \left(\frac{\text{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200\text{만원} \right)$$
8. ~~㉒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란: ⑮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9. ㉒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㉒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1.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결정세액 계산

(단위: m², 원)

구 분		⑨ 합 계	임대물건(1)	임대물건(2)	임대물건(3)
① 임대주택 수					
② 임대주택	소재지				
	업종코드				
③ 건물면적					
④ 공동소유 여부(손익분배 비율)			여[](%), 부[]	여[](%), 부[]	여[](%), 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	~	~
임차인	⑦ 성명(상호)				
	⑧ 임차인등록번호				
⑨ 임대기간			~	~	~
계약내용	⑩ 보증금				
	⑪ 월세				
⑫ 월세 수입금액					
⑬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					
⑭ 총수입금액=(⑫ + ⑬)					
⑮ 필요경비					
⑯ 공제금액					
⑰ 사업소득금액(과세표준) =(⑭ - ⑮ - ⑯)					
⑰ 세율		14%			
⑲ 산출세액=(⑰ × ⑰)					
⑳ 세액감면					
㉑ 결정세액=(⑲ - ㉒)					

2. 지방소득세 계산

(단위: 원)

㉓과세표준		㉔세율	1.4%	㉕산출세액		㉖세액감면		㉗결정세액	
-------	--	-----	------	-------	--	-------	--	-------	--

2.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위: 원)

㉘과세표준		㉙세율	20%	㉚산출세액		㉛결정세액	
-------	--	-----	-----	-------	--	-------	--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40호서식(2)] 삭제 <2001.4.30>

[별지 제40호서식(3)] 삭제 <2001.4.30>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거주구분</td> <td style="width: 50%;">거주자1 / 비거주자2</td> </tr> <tr> <td>내·외국인</td> <td>내국인1 / 외국인9</td> </tr> <tr> <td>거주자국</td> <td>거주자국코드</td> </tr> </table>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자국	거주자국코드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자국	거주자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③ 주 소	②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⑦ 휴대전화번호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㉓ 추계 - 단순율 ⑨ 기장의무 ㉔ 간편장부대상자 ⑩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㉔ 수정신고, ㉕ 기한후신고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③ 총수입금액: ① 소득명세(㉔)의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③ 필요경비: ① 소득명세(㉔)의 필요경비의 합계를 적습니다.	
③ 종합소득금액: ③ - ③	
③ 소득공제: 소득공제명세(㉕~㉙)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 계	계	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 공 제 명 세					㉕	본 인		
					㉖	배 우 자		
					㉗	부 양 가 족		
					㉘	경로우대자		
					㉙	장 애 인		
					㉚	부 녀 자		
					㉛	한부모가족		
		㉜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㉝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㉞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㉟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㊱ 과세표준: ㉜ - ㉟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㊲ 세율: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㊳ 산출세액: ㊱×㊲ - 누진공제액(3쪽 작성방법 참고)						
		㊴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㉕~㉙)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 액 공 제 명 세		㉕ 전자계산서 발급전세액공제: 전자계산서 발급건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1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㉖ 자녀 세액 공제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명	
	㉗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 단,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연 700만원 한도)의 12%(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는 15%)			공제 대상 금액	과학교육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㉘ 기부 금 세액 공제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시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㉙ 표준세액공제: 7만원						
	㉚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㉚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㉛ 전자신고세액공제							
	㉜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㉞ 결정세액: ㉜ - ㉞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구 분						금 액	
⑥0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⑥1~⑥9)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 세액 계산 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⑥1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20/100		
	⑥2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10/100		
	⑥3 납 부 지 연		미 납 일 수 ()		25/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⑥4 보고 불 성 실	지 급 명 세 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 제 출 (불 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미 제 출 (불 명)	지 급 금 액		0.5/100 (0.25/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0.25/100)	
	⑥5 공동사업장 등 록 불 성 실		미 등 록 · 허 위 등 록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5/100	
				총 수 입 금 액		0.1/100	
⑥6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⑥7 신용카드거부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⑥8 현금영수증 미 발급 등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미 발 급 금 액		20/100 (10/100)				
⑥9 종결정세액: ⑤9+⑥0							
기납부 세 액	⑦0 중간예납세액						
	⑦1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⑤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⑦2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⑥9-⑦0-⑦1							

④ 소득명세

⑦3일련 번호	사업장		⑦6소득 구분코드 (3쪽 작성 방법 참고)	⑦7업종 코드	⑦8총수입 금액	⑦9단순 경비율(%)		⑧0필요경비 (=⑦8×⑦9)	⑧1소득 금액 (=⑦8-⑧0)	⑤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	
	⑦4상호 (성명)	⑦5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일반율	자가율			⑧2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⑧3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
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⑧, 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께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는 '㉠' 요건을 충족(2019년 귀속 이후부터는 '㉠' · '㉡' 요건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⑪ 금융기관명/채권자명명란 및 ⑫ 계좌번호란: ⑦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인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기본공제: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5.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③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00만원 ④ 장애인 200만원
 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⑥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④과 중복인 경우 ⑤를 적용)
6. ⑫ 기부금(이월분) 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7. ⑬ 세율란 및 ⑭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⑫)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⑫)×세율(⑬) - 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7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8년 이후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8. ⑮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9. ⑯ 무신고가산세·⑰ 과소신고가산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10. ⑱ 보고불성실가산세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의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감감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
11. ⑲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12.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13. ⑳ 원천징수 및 납세조항 징수세액란: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항 징수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항 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항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32, 40) 중 해당하는 코드를 소득구분에 맞게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업종코드가 701101, 701102, 701103, 701104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업의 소득)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⑫ 수정신고	⑭ 기한 후 신고
--------	--------	--------	-----------

⑮ 환급금 계좌신고	⑯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⑰ 계좌번호
------------	--------------	--------

⑱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⑲ 총수입금액: ① 종교인소득 명세의 ⑳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㉑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㉒ 종합소득금액: ㉑ - ㉓		
㉔ 소득공제: ㉕~㉗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㉘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 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 계 코 드	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소 득 공 제 명 세					기본 공제	㉙ 본 인	
						㉚ 배 우 자	
						㉛ 부 양 가 족	
					추가 공제	㉜ 경 로 우 대 자	
						㉝ 장 애 인	
						㉞ 부 녀 자	
						㉟ 한 부 모 가 족	
	㊱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㊲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㊳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㊴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㊵ 소득공제 등 종합소득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㊶ 과세표준: ㉒ - ㊵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㊷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㊸ 산출세액: ㊶ × ㊷ - 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㊹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㊺~㊻)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 액 공 제 명 세	㊺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㊻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㊼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구 분					금 액	
세 액 공 제 명 세	㉔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시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㉕ 표준세액공제: 7만원					
	㉖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㉗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㉘ 외국납부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㉙ 결정세액: ㉔-㉗("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㉚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㉞~㉟)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 산 세 액 계 산 명 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㉞ 무 신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고납부세액		40/1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고납부세액		20/100	
	㉟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㉟ 납부(환급)불성실	미 납 일 수	()	25/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㉛ 총결정세액: ㉙+㉚						
기납부 세 액	㉜ 원천징수세액: ㉑ 종교인소득 명세의 ㉟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㉝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㉛-㉜						

㉑ 종교인소득 명세

㉞ 일련 번호	소득의 지급자		㉟ 총수입금액	㉟ 원천징수세액
	㉟ 종교단체명	㉟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1				
2				
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②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⑦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 표시 합니다.
4. ② 환급금 계좌신고란: ⑥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③ 총수입금액란: ①종교인소득 명세의 ⑥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③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란: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기본공제: 본인(⑤)과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⑥):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⑦):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9.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⑧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⑨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⑩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 ⑪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⑩과 중복인 경우 ⑩을 적용)

10. ⑫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1. ⑭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2. ⑮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조합 등")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투자금액	공제율	한도액
조합 등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 등	1천5백만원 이하	100%	
	1천5백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50%	
	5천만원 초과분	30%	

작성방법

13. ㉔ 소득공제 등 종합소득 초과액란: 작성방법 12번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액이 2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㉕ 세율란 및 ㉖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㉗)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㉗)×세율(㉕)-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

15. ㉚ 연금저축세액공제란: 아래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 가. 공제 대상금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400만원(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의 경우 3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7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 나. 공제액: 공제 대상금액에 공제율 1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㉛ 기부금세액공제 및 ㉜ 정치자금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 ㉠ 법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및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2): (종합소득금액 - ㉠의 기부금 공제액) × 30%
- ㉢ 지정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0, 41)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 · ㉡의 기부금 공제액) × 10% + [(종합소득금액 - ㉠ · ㉡의 기부금 공제액) × 20%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 · ㉡의 기부금 공제액) × 30%
- 나. 세액공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외의 기부금(㉛): "가"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7. ㉝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을 공제합니다.
18. ㉞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과 ㉡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㉛)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9. ㉟ 무신고가산세 및 ㊱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20. ㊲ 원천징수세액란: ㉠종교인소득 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21. ㉢ 종교인소득 명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 총수입금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고, ㉤ 원천징수세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관리번호	-
------	---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❶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유형	③5 분리과세(주택임대)		⑧ 소득구분	③3 분리과세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⑨ 기장의무	①복식부기의무자, ②간편장부대상자		⑩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②0 수정신고, ④0기한후신고
❷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❸ 세무대리인	⑬ 성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
	⑮ 관리번호	-	⑯ 전화번호	

❹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⑰	총수입금액: 분리과세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을 적습니다.(=⑤4)		
⑱	필요경비		
⑲	공제금액		
⑳	사업소득금액(과세표준): ⑰ - ⑱ - ⑲		
㉑	세율		14%
㉒	산출세액: ㉑×㉑		
㉓	세액감면		
㉔	결정세액		
㉕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㉖~㉗)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㉔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고 납부 세 액		40/100 (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고 납부 세 액		20/100		
				수 입 금 액		7/10,000		
㉕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60/100)		
				수 입 금 액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㉖ 납부지연			미 납 일 수		()	25/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㉗ 보 고 불 성 실	지 급 명 세 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직 전 년 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	계 산 서 합 계 표	미 제 출 (불 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 (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 (5/1,000)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㉘ 공동사업장 등록불성실	미 등 록 · 허 위 등 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0.1/100		

구 분	금 액
㉓ 총 결정세액: ㉒+㉑	
㉔ 추가납부세액 : ㉒+㉑	
㉕ 납부할 세액: ㉓+㉔	

㉖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㉖ 과세표준: ㉓ 세액감면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㉗ 세율	20%
㉘ 산출세액: ㉖×㉗	
㉙ 가산세액	
㉚ 총결정세액: ㉘+㉙	
㉛ 추가환급세액	
㉜ 납부(환급)할 세액: ㉚+㉛	

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

구 분	합 계	임대물건(1)	임대물건(2)	임대물건(3)
㉝ 임대주택 수				
㉞ 임대주택 소 재 지				
업 종 코 드				
㉟ 건물면적				
㊱ 공동소유 여부(손익분배 비율)		여[](%), 부[]	여[](%), 부[]	여[](%), 부[]
㊲ 사업자등록번호				
㊳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	~	~
임 차 인 ㊴ 성 명				
㊵ 임차인등록번호				
㊶ 임 대 기 간		~	~	~
계 약 보 증 금				
내 용 ㊷ 월 세				
㊸ 월세 수입금액				
㊹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				
㊺ 총수입금액=(㊸ + ㊹)				
㊻ 필요경비				
㊼ 공제금액				
㊽ 사업소득금액(과세표준)=(㊺ - ㊻ - ㊼)				

[illegible]

구분	공제 받은 과세기간	추가납부사 유	감면세액	가 산 액			추가납부액 ($\text{㉑} + \text{㉔}$)
				이자율 [()/10,000]	기 간	금 액 ($\text{㉑} \times \text{㉒} \times \text{㉓}$)	

[illegible]

㉮수입이자 및 할인료	㉯배당금	㉰계

귀하

작성방법

1. ①⑦ 총수입금액: 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⑤③)를 적습니다.
2. ①⑧ 필요경비: 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의 필요경비 합계(=⑤④)를 적습니다.
3. ①⑨ 공제금액: 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의 공제금액 합계(=⑤⑤)를 적습니다.
4. ②⑥ 무신고가산세 및 ②⑦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5. ④④ 공동소유 여부(손익분배 비율): 공동소유 임대주택인 경우 "여"에 체크(√)하고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을 적으며, 단독소유인 경우 "부"에 체크합니다.
6. ④⑥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 기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 나. 「소득세법」 제169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
 다.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7. ⑤① 월세 수입금액: 연간 월세 수입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8. ⑤②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산입액: 3주택(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의 ⑧⑥ 총수입금액산입금액을 적습니다.
9. ⑤④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10. ⑤⑤ 공제금액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left(\frac{\text{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400\text{만원} \right) + \left(\frac{\text{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200\text{만원} \right)$$
11. ⑥③ 소득세상당액란: 제2항 단서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한 세액과의 차액
12. ⑦① 감면세액란: 소득세법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사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13. ⑧④ 적용률란: 60%를 적습니다.
14. ⑧⑤ 이자율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관리번호

-

(년 귀속) 퇴직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1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신고구분	⑤ 전화번호
⑥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⑦ 은행명
⑧ 계좌번호	⑨ 계좌번호

⑩ 정기신고	⑪ 수정신고	⑫ 경정청구	⑬ 기한후신고
⑭ 신고일			
⑮ 신고대리인			
⑯ 신고대리인명			
⑰ 신고대리인번호			

① 퇴직소득명세	② 지급처명	③ 입사일	④ 지급일	⑤ 퇴직급여	⑥ 비과세 퇴직급여	⑦ 과세대상 퇴직급여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퇴사일	⑩ 근속월수			
	합 계					

⑧ 근속연수계산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정산근속연수	⑬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⑭ 2013.1.1. 이후 근속연수(⑬-⑭)

6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퇴직소득세 금 액
		퇴직소득(⑫)	⑮
		근속연수공제	⑯
		환산급여 [(⑮-⑯) × 12배/정산근속연수]	⑰
		환산급여별공제	⑱
		퇴직소득과세표준(⑰-⑱)	⑲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환산산출세액(⑲ × 세율)	⑳
		산출세액(⑲ × 정산근속연수/12배)	㉑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⑫)	㉒
		퇴직소득정률공제	㉓
		근속연수공제	㉔
		퇴직소득과세표준(㉒-㉓-㉔)	㉕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계
		과세표준안분 (㉕ × 각근속연수/정산근속연수)	㉖
		연평균과세표준(㉖/각근속연수)	㉗
		환산과세표준(㉗ × 5배)	㉘
		환산산출세액(㉘ × 세율)	㉙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㉙ × 세율, 13.1.1.이후: ㉙/5배)	㉚
		산출세액(㉚ × 각 근속연수)	㉛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㉛ × 퇴직연도별 비율) + [㉜ × (100%-퇴직연도별 비율)]	㉝
		세액공제	㉞
		가산세	㉟
		기납부 세액	㊱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㉜-㉝+㉞-㉟)	㊲
		분납할 세액(2월내)	㊳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㊲-㊳)	㊴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1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영수) 일 자 인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1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3. ① 기본사항(⑥)란: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의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 1'을 선택합니다.
4. ② 환급금 계좌신고(⑦·⑧)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5. ③ 세무대리인(⑨~⑬)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6. ④ 퇴직소득명세(⑭~⑳)란: ⑰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합니다. ⑱ 명예퇴직수당 추가퇴직급여란에는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해고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2)] 또는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
7. ⑤ 근속연수계산(㉓~㉔)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중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8. ⑥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㉕ 퇴직소득란: ㉔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 나. ㉖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구분 \ 환산급여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 다. ㉗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 라. ㉘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 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 마. ㉙ 환산과세표준란과 ㉚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 바. ㉛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㉙ 연평균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㉚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 사. 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 ㉜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 아. ㉝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 자. ㉞ 가산세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9.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기부금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인적사항	① 근무지 또는 사업장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구 분		⑨ 기부 내용	기 부 처		⑫ 기부자			건수	기부 명세			
⑦ 유 형	⑧ 코드		⑩ 상호 (법인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등	관계 코드	성명	주민 등록번호		기부금액			
									⑬ 합계 (⑭+⑮)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	⑮ 기부 장려금 신청금액	⑯ 기타
정치자금	20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분	총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법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드		10	20	40	41	42	10, 40, 41	50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④ 기부금 조정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⑲ 공제대상 금액(⑰-⑱)	해당 연도 공제금액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세액(소득)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작성방법

※ 기부금을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⑦ 유형란 및 ⑧ 코드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에 해당하는 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은 "법정", "지정", "종교단체"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 가.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 다.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 라.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단체", 코드번호 "41"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코드번호 "50"
2. ⑨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⑩ 상호(법인명)란과 ⑪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⑬ 기부 명세의 금액란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⑫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⑭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⑮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⑯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 '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⑭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법 정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10년	10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란에 적습니다.
 -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⑰ 기부금액, ⑱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⑲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에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순서로 공제하고, 종교단체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바. 2013.12.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소득공제로 우선하여 공제하며, 2014년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사. 이월기부금 공제 후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	--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②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③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④ 기부내용

유 형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1. ❷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유형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제2호(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3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4호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 각 목에 열거된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5호 (각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6호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당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	201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 (일정 요건을 갖춘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	461

2. ❸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❹ 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지정	40
「소득세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	42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	50

4. ❺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 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장부가액	Max(장부가액, 시가)	장부가액*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Max(장부가액, 시가)		시가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추가납부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과 세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준비금 환입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⑥ 구분	⑦ 필요경비 계상 과세기간	⑧ 추가납부 대상 준비금 환입액	⑨ 공제액	⑩ 차감 계 (⑧-⑨)	⑪ 소득세 상당액	⑫ 이 자 율 (일 변 전)	⑬ 기 간	⑭ 추가납부액 (⑪ × ⑫ × ⑬)
계								

2. 소득공제액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필요경비에 대한 추가납부액								
⑮ 구분	⑯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 계상 과세 기간	⑰ 추가납부 사유	⑱ 공제받은 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상액	⑲ 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㉓ 추가 납부액 (⑲+㉔)
					㉒ 이자율 [() / 10,000]	㉑ 기 간	㉔ 금 액 (⑲ × ㉒ × ㉑)	
계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액							
㉔ 구분	㉕ 공제받은 과세기간	㉖ 추가납부 사유	㉗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㉙ 추가납부액 (㉗+㉘)
				㉘ 이자율 [() / 10,000]	㉚ 기간	㉘ 금액 (㉗ × ㉘ × ㉚)	
계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⑭+㉓+㉙)	
--------------------------	--

작성 방법

1. 준비금 환입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⑪소득세상당액에 ⑫이자율과 ⑬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가산액의 합계액을 ⑭란의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 및 「소득세법」 제64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추가납부대상 공제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대한 ⑮소득세 상당액과 그 금액에 ⑯란의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⑰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⑱란의 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소득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상 ⑳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㉑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㉒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⑭+⑰+㉒)금액은 별지 제40호서식(1)의 제3쪽 ㉓란과 같아야 합니다.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보증금 등 적수 [(A)금액]	⑤건설비 상당액 적수 [(B)금액]	⑥보증금 잔액 [(④-⑤)÷ (365, 윤년 366)]	⑦이자율	⑧총수입금액 상당액 (⑥×⑦)	⑨보증금 운용수입	⑩총수입금액 산 입 금 액 (⑧-⑨)

2.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⑪일자	⑫보증금	⑬일수	⑭적수(⑫×⑬)	⑪일자	⑫보증금	⑬일수	⑭적수(⑫×⑬)
				합 계			(A)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⑮일 자	⑯적 요	⑰건설비 상당액	⑱일 수	⑲건설비 상당액 적수 (⑰×⑱)
합 계				(B)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부동산(주택 제외)임대소득이 있는 기장자만 사용합니다.
2. ④보증금 등 적수란 : ⑭적수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⑤건설비상당액 적수란 : ⑲건설비상당액적수란의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4. ⑥보증금 잔액란 : 일수는 윤년의 경우 366을 적용합니다.
5. ⑦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6. ⑨보증금 운용수입란 : 제3쪽의 ㉔계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⑰건설비 상당액란 :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제3쪽의 (C)·(D)·(E) 중 큰 금액을 적고, 199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은 제3쪽의 (C)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이미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쪽의 ④건설비 총액란에 기장한 장부상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부동산(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2)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상 호		③성명	
		②사업자등록번호			

1. 건설비 상당액의 계산

가. 취득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④건 설 비 총 액	⑤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⑥보증금을 받고 임 대 한 면 적	⑦건 설 비 상 당 액 [④×(⑥/⑤)]
계			(C)

나. 1990. 12. 31 이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보증금 및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⑧1990. 12. 31 현재 보 증 금	⑨1990. 12. 31 현재 보증금을 받 고 임 대 한 면 적	⑩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⑪건 설 비 상 당 액 [(⑧/⑨)×⑩]
계			(D)
⑫1990. 12. 31 현재 기 준 시 가	⑬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⑭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⑮건 설 비 상 당 액 [(⑫/⑬)×⑭]
계			(E)

다. 1991. 1.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

⑯취 득 당 시 기 준 시 가	⑰임 대 용 건 축 물 연 면 적	⑱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	⑲건 설 비 상 당 액 [⑯×(⑱/⑰)]
계			(F)

2. 임대보증금 운용수입 명세

⑳과 목	㉑계 정 금 액	㉒이자 및 할인료	㉓배 당 금	㉔계

작성 방법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1. ④건설비총액란: 임대용부동산(토지를 제외합니다)의 취득(매입·건설을 포함합니다)에 소요된 금액(자본적지출금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을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설비총액 변동일까지의 건설비총액을 순차로 적으며, 임대용부동산 취득시 건물·토지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합니다.

※ 건물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에 따라 매년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⑤·⑬·⑰임대용건축물연면적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3. ⑥·⑩·⑭·⑱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란: 점포별 임대보증금을 받고 실제 임대에 제공된 건물면적(공유면적 포함) 합계를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의 변동일까지 면적을 차례대로 적습니다.
4. 임대보증금운용수입명세란(⑳~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 및 배당금을 적습니다.

부동산(주택)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②주민등록 번호		③성명	
-------	--------------------	-------------	--	-----	--

1. 주택임대보증금의 총수입금액 조정

④소재지	⑤임차인		⑥임 대기 간	⑦보증 금 등	⑧공 제액	⑨보증 금잔액 (⑦-⑧)	⑩ 일수	⑪보증 금잔액 적수 (⑨×⑩)	⑫적 용율	⑬이 자율	⑭총수입 금액 상당액 [(⑪×⑫) ×⑬]÷365, 윤년366]	⑮보증금 운용수입			⑯총수 입금액 산입금 액 (⑭-⑮)
	성명	납세자 번호										수입 이자 및 할인 료	배 당 금	계	
합계															

2. 주택임대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

⑯과목	⑰계정금액	⑱수입이자 및 할인료	⑲ 배당금	⑳계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적용합니다.
- ⑧ 공제액란 : 2주택이상에서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3억 원한도).
- ⑫ 적용률란 : 60%를 적습니다.
- ⑬ 이자율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옮겨 적습니다.
- ⑮ 보증금 운용수입란 : 「2. 보증금 등 운용수입 명세」의 ⑳계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보험차익금 국고보조금] 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①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상 호	③성명
	년 월 일까지	②사업자등록번호	

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액조정

보험차익 계산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필요경비산입액		
④ 보험금	⑤ 멸실손괴 자산가액	⑥ 보험차익 (④－⑤)	⑦ 과목	⑧ 취득한 자산가액	⑨ 취득할 자산가액	⑩ 계 (⑧＋⑨)	⑪ 한도금액 (⑩－⑤, 다만, ⑪≤ ⑥)	⑫ 본 인 계상액	⑬ 한 도 초과액 (⑫－⑪)
계									

2.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액조정

⑭보조금 수령액	취득한 또는 취득할 자산가액				<19>필요경비산입액 (⑭ 또는 <18> 중 작은 금액)
	⑮과 목	<16>취득한 자산가액	<17>취득할 자산가액	<18>계 (<16>＋<17>)	
계					

3. 미사용분 총수입금액 산입액 조정

<20>구 분	<21>필요경비 산입연도	<22>계 획 서 제출금액	<23>사 용 액	<24>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22>－<23>)
계				

작성 방법

- 「소득세법」 제31조제2항 또는 동법 제32조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험금사용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⑨취득할 자산가액란 : 보험금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17>취득할 자산가액란 :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⑮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 <23>사용액란 : 법정기한 내에 자산취득 등에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⑬란의 금액은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24>란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기부금 조정명세서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년까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1. 법정기부금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① 기준소득금액		⑤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④, ②⑥]	
②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⑥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④-⑤)>0, ③]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 소득금액 차감잔액 [(⑧-⑪)>0]	
⑩ 한도액 (⑧×30%)		⑬ 한도초과액[(⑨-⑩)>0]	
⑪ 필요경비 산입액 MIN(⑨, ⑩)			

3.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⑭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⑮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⑮, ⑮]	
⑮ 종교단체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⑯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⑮-⑮)>0, ⑮]	
⑯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⑭+⑮)		⑰ 한도초과액[(⑯-⑮)>0]	
⑰ 지정기부금 한도액(㉠또는㉡)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⑮×10%+ [⑮×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중 적은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⑮×3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⑱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⑲ 필요경비 산입 합계 (⑥+⑪+⑮)	⑳ 한도초과액 합계(⑱-⑲)=(⑦+⑬+⑰)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㉔ 기부금액	㉕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㉖ 공제대상 금액 (㉔-㉕)	㉗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	㉘ 다음 과세기간 이월액(㉖-㉗)
합 계						

작성 방법

1. ①기준소득금액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 ③, ⑨, ⑭, ⑮ 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의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A-B)>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㉗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5. ⑥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⑥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3.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8.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⑤, ⑱란에 적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 이월액을 과세기간별·기부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신고 내용	거주 주택 (양도 주택)	④ 소 재 지			
		⑤ 주택 면적(㎡)	⑥ 토지 면적(㎡)	⑦ 취득일	⑧ 양도일
		⑨ 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⑩ 양도가액	
	장기 임대 주택 임대 내용 · 가정 어린 이집	⑪ 세 법 상 사 업 자 등 록	등록일 : 등록호수 :		⑫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⑬ 소 재 지	⑭ 주택면적(㎡)	⑮ 토지면적(㎡)	⑯ 임대개시일
					⑰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기간
최초 임대							
2회 임대							

⑱ 직전거주 주택보유명세	소재지	양도일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신고인 제출 서류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2.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2. 거주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 · 건축물대장 3. 장기임대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 · 건축물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⑨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 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 양도자의 거주기간을 적습니다.
- ⑩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⑪란, ⑫란: 사업자등록 시 및 임대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 ⑬란: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함께액을 적습니다.**
- ⑭란: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 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	-----

신청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양도 주택	④ 구분 [] 장기임대주택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 장기가정어린이집 [] 일반주택			
		⑤ 소재지			
		⑥ 주택면적(㎡)	⑦ 토지 면적(㎡)	⑧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⑨ 국민주택 여부
		⑩ 취 득 일		⑪ 양 도 일	
	양도 주택 임대 내용	⑫ 사업자등록일 등 이후 기준호수 임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 임대 개시일	
		⑬ 공 제 기 간	년 월 일	⑭ 주택임대기간(⑫-⑬)	년 월 일
		⑮ 세법상 사업자등록	등록일 : 등록호수 :	⑯ 「임대주택법」에 따 른 임대사업자등록	등록일 : 등록호수 :

⑰ 임대내역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기간
최초 임대							
2회 임대							
3회 임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7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 등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 서류	1.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5 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 중 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 초본 2. 토지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 · 건축물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④란: 양도한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3호의 주택에 해당하면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란에, 같은 항 제8호의2의 주택에 해당하면 장기가정어린이집란에, 같은 조 제4항의 일반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주택란에 [V]표시로 구분합니다.
- ⑧란: 2011.10.14.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⑫란: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임대주택으로서 임대등록 이후 기준임대료 수 이상을 임대한 기간을 적습니다.
- ⑬란: ⑫란의 임대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않는 기간을 적습니다.
- ⑮란, ⑯란: 사업자등록 시 및 임대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
- ⑰란: 양도주택 외에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초과하는 경우 별첨 가능)
- ⑱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개시일을 적습니다.**
- 양도주택이 일반주택인 경우는 ⑫란부터 ⑯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년 귀속)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① 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② 양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성명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드	양도소득세합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도소득금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④+⑤-⑥-⑦)							
⑨ 세율							
⑩ 산출세액							
⑪ 감면세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⑮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⑯ 납부할 세액 (⑩-⑪-⑫-⑬+⑭-⑮)							
⑰ 분납(물납)할 세액							
⑱ 납부세액							
⑲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⑳ 소득세 감면세액				년 월 일			
㉑ 세율				신고인 (서명 또는 인)			
㉒ 산출세액							
㉓ 수정신고가산세 등							
㉔ 기신고·결정·경정세액							
㉕ 납부할 세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㉖ 분납할 세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㉗ 납부세액				㉙ 금융기관명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㉘ 환급세액				㉚ 계좌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파생상품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주식의 경우 '20.1.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통산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7. ⑩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의 금액 중 큰 것으로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8. ⑪ 감면세액란·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및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 + (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2010.12.31.까지의 양도분에 한정합니다.
9. ⑬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⑭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납부지연[1월 3/10,000(2019. 2. 12. 이후 1월 2.5/10,000)]·기장불성실 등 가산세[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1. ⑮ 기신고, 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2. ⑯ 납부할 세액란부터 ⑲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3. 환급금 계좌신고(29·30)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 내 자 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일반세율 적용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0	6~42%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15	40%
	다.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20	50%
	라.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40	40%
	마. 미등기 양도	1-30	70%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1-25	45%
	사.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8	45%
	아.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6~52%
	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5	40%
	차.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6	50%
	카.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1	26~62%
	타.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7	40%
	파.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18.1.1. 이후 양도분)	1-38	50%
	하. 비사업용토지, '09.1.1. ~ '09.3.15. 취득 및 양도분	1-26	60%
	거. 비사업용토지, '09.3.16.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0	6~4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 내 자 산	나.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 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18.3.31. 양도분) 더.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 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18.3.31. 양도분)	1-71 1-73	16~52% 40%
	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18.1.1. 이후 양도분) 머.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 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버.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 이후 양도분) 서. 일반세율에 1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 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 택('18.4.1. 이후 양도분) 어.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 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저.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 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18.4.1. 이후 양도분) 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 이후 양도분) 커. 일반세율에 20%p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 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 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터.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 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18.4.1. 이후 양도분)	1-21 1-51 1-53 1-52 1-54 1-55 1-57 1-56 1-58	50% 16~52% 40% 16~52% 40% 26~62% 40% 26~62% 40%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나. 중소기업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법인 해외주식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외 법인 해외주식 라.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상장, 비상장) 1-70 1-62 1-61 1-63	30% 10% 20% 20~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09.3.16.∼'15.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6~42% 6~42% 60% 6~35%('12.1.1.이후 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1-81	5%('18.3.31. 이전) 10%('18.4.1. 이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6. 「소득세법」 제11절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국 외전출세)	1-94	20~25%
국 외 자 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 리)	2-10	6~42%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 10% 20%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42% 6~42%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	---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 세 율 구 분 (코 드)	합 계	(-)	(-)	(-)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③ 자 산 종 류 (코 드)		()	()	()
거래일 ④ 양도일 (원인)		()	()	()
(거래원인) ⑤ 취득일 (원인)		()	()	()
거래자산 면적(㎡)	⑥ 총 면적 토 지	(/)	(/)	(/)
	(양도지분) 건 물	(/)	(/)	(/)
	⑦ 양도면적 토 지			
	건 물			
	⑧ 취득면적 토 지			
	건 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 양 도 가 액				
	⑩ 취 득 가 액				
	취 득 가 액 종 류				
⑪ 기 납 부 토 지 초 과 이 득 세					
⑫ 기 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 체 양 도 차 익				
	비 과 세 양 도 차 익				
	⑬ 과 세 대 상 양 도 차 익				
⑭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					
⑮ 양 도 소 득 금 액					
감 면 소 득 금 액	⑯ 세 액 감 면 대 상				
	⑰ 소 득 금 액 감 면 대 상				
⑱ 감 면 종 류	감 면 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⑲ 건물	일 반 건 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㉑ 건물	일 반 건 물				
		오피스텔·상업용				
		개별·공동주택				
	㉒ 토 지					
합 계						

작성 방법

1. ① 서울구분란: 다음의 서울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서울구분코드를 적습니다.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서울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서울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소재 지구 분	소재지		세 을 구 분	토지 · 건물																				
	국 내	국 외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 등 기	비사업용토지														다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09.3.16~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보유)	지정지역내 1세대3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26~ 62%		40%	26~ 62%	50%	26~ 62%	6~42%	16~ 52%	40%	16~ 52%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71	73	71

서울구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다주택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식 외	주식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1세대 3주택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의 합이 3이상인 경우의 주택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서울	16~52%	40%	16~52%	16~52%	40%	16~52%	26~62%	40%	26~62%	40%	26~62%	6~42%	40%	6~42%	50%	50%	6~42%	6~42%	16~52%	45%	45%	60%	60%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0	10	11	25	28	26	27

2. ③ 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에 해당),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 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 양도면적란: ⑥ 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 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⑤번란의 금액)
-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
-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용
- 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기준시가(㉔+㉕)/양도시기기준시가(㉔+㉕)]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
-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7. ⑪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번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1세대1주택 외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장기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 공제(8년 이상은 50%)(「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10. ⑯ 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⑰ 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2. ⑱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3. ⑲ 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 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m^2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나. 상업용·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개별·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4. ⑳ 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㉑ 건물란: ⑱ 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16. ㉒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관리번호	-
------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등 종 목 명	합계						
② 주식등 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 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③ 국 내 / 국 외 구 분							
④ 주 식 등 종 류 코 드							
⑤ 양 도 유 형							
⑥ 취 득 유 형							
⑦ 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등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⑧ 양 도 일 자							
⑨ 주 당 양 도 가 액							
⑩ 양 도 가 액 (⑦ × ⑨)							
⑪ 취 득 일 자							
⑫ 주 당 취 득 가 액							
⑬ 취 득 가 액 (⑦ × ⑫)							
⑭ 필 요 경 비							
양도소득금액 (⑩ - ⑬ - ⑭)	전 체 양도소득금액						
	비 과 세 양도소득금액						
	⑮ 과 세 대 상 양도소득금액						
⑯ 감 면 소 득 금 액							
⑰ 감면종류	감 면 율						
⑱ 과 세 이 연 신 청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① 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 국내 / 국외 구분 : 국내·국외주식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형	국내주식	국외주식
코드	1	2

4.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식등 종류	비상장주식등 주권 등 비상장법인					상장주식등 주권등 상장법인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 (주식등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국외 주식등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중소 기업외 법인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세율	10%	20~25%	20%	20~25%	30%	10%	20~25%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코드	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5 코스닥 25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52	62	61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세율 및 코드 적용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중소기업 외 대주주에 대한 세율 및 코드 적용은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5. ⑤ 양도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 유형	매매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코드	1	2

6. ⑥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7. ⑦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⑧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9. ⑩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⑦×⑧)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⑭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 감면 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과세이연 특례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 ⑰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⑱ 과세이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 해당여부에 따라 각각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과세특례에 따른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비상장 국내주식(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을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주식등 종목명: 주식발행법인명, 나.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다. 국내 / 국외구분 : 1 라. 주식등 종류코드: 31 마. 양도유형: 1 바. 취득유형: 1

15.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⑤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 주식 종류에 따라,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51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

⑧ 양도일자란 :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⑨ 주당양도가액란 :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⑩ 양도가액란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시가(⑦×⑧)를 적습니다.

※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4.주식등 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25%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리번호 -

①과세대상연도 년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세율 구분코드	종목				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⑬양도소득금액
	③국내/외	④파생상품 유형	⑤증권사 등	⑥계좌번호	⑦매도수량	⑧매도가액	⑨수수료 등	⑩매수수량	⑪매수가액	⑫수수료 등	
합계											

작성 방법

1. 본 서식은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작성하며 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①과세대상연도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연도를 적습니다.
3. ②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일	2016.1.1.~2018.3.31.	2018.4.1. 이후
세율	5%	10%
코드	80	81

4. ③국내/외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까지에 따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외'로 적습니다.
5. ④파생상품 유형란: 거래기법에 따라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⑤증권사 등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⑥계좌번호란: 해당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8. ⑦매도수량 및 ⑩매수수료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9. ⑧매도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도가액을 적습니다.
10. ⑨ 및 ⑫수수료 등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1. ⑪매수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수가액을 적습니다.
12. ⑬양도소득금액란: 같은 종목의 양도소득금액(⑧ - ⑨ - ⑪ - ⑫)을 적습니다.

관리번호	-	(년 귀속)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	---	---

1. 양도인 (판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소				거주지국	

2. 양수인 (산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자 산 종 류 (코 드)	()	세 율 구 분 (코 드)	(-)
----------------------	-----------------	--------	-----------------	-------------

자 산 소 재 지				
양 도 일 (원인)	()	취 득 일 (원인)	()	
양도면적 (토지)		양도면적 (건물)		

4. 양도소득세 계산						
① 양도가액 (판가격)	② 취득가액 (산가격)	③ 필요경비	④ 양도차익 (①-②-③)	⑤ 장기보유 특별공제		
⑥ 양도소득금액 (④-⑤)	⑦ 양도소득 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⑥-⑦)	⑨ 세율	⑩ 산출세액 (⑧×⑨)		
⑪ 가산세		⑫ 납부할 세액 (⑨-⑩+⑪)		⑬ 분납할 세액		⑭ 납부세액 (⑫-⑬)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계			

5. 취득가액 상세명세서 (② 취득가액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으며, 음영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구 분	구분코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일	지급금액	증빙종류(코드)
매 입 가 액						
취 득 세 · 등 록 세						
매 입 부 대 비 용						

6.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 (③ 필요경비란 금액의 상세 명세를 적습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 타 비 용						
중개수수료 등						

7.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세액계산 불필요).

신고인(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양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첨 부 서 류	1. 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2.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	---

작성 방법

1. 양도인(판사람)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 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 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거주지국 및 거주지국코드는 양도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중 세율구분(코드)란: 다음의 세율구분 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소재지 구분	소재지		세 율 구 분	토지·건물																					
	국 내	국 외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미 등 기	비사업용토지														다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09.3.16~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보유)	지정지역내 1세대3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26~ 62%	40%	26~ 62%		50%	26~ 62%	6~42%	16~ 52%	40%	16~ 52%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71	73	71	

세 율 구 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다주택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의 임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식 외	주식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1세대 3주택	주택과 조합원 임주권의 합이 30이상인 경우의 주택	비사 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임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임주권의 합이 30이상인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세율	16~ 52%	40%	16~ 52%	16~ 52%	40%	16~ 52%	26~ 62%	40%	26~ 62%	26~ 62%	40%	26~ 62%	6~ 42%	40%	6~ 42%	50%	50%	6~ 42%	6~ 42%	16~ 52%	45%	45%	60%	60%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0	10	11	25	28	26	27			

3.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중 자산종류(코드)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4. 3. 양도자산 및 거래일 중 양도일(원인)·취득일(원인)란: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의 경우),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5. ① 양도가액: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
6. ② 취득가액: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질거래가액
7. ③ 필요경비: 6.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의 지급금액을 합쳐하여 적습니다.
8. ⑤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1세대1주택 외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70% 공제(8년 이상은 50%)(「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임대주택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9.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0. ⑨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1. ⑩ 산출세액: ⑧란의 과세표준에 ⑨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적습니다.
12. ⑪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 신고 40%·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이후 1일 2.5/10,000)]·가장불성실 등 가산세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는 가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⑬ 분담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담하는 세액을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4. 6. 필요경비 계산 상세명세서: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그 내용 등을 적습니다.
· 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증명서류 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에 별도로 적습니다.
15. "7.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1. 신고인, 2. 양수인, 3.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4. 양도소득세 계산은 계산할 필요 없이 소명자료 증명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부 동 산 등 양 도 신 고 확 인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발행번호	제 호	처리기한: 즉시
------	-----	----------

신청인 (양도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등
	③ 주소 (전화번호:)	
	④ 구분 [] 재외국민 [] 외국인	
등기권리자 (양수인)	⑤ 성명 (법인명)	⑥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⑦ 주소 (전화번호:)	
⑧ 등기원인		⑨ 양도계약일자

부 동 산 등 양 도 내 용

⑩ 부동산소재지	⑪ 종 류	⑫ 면적(㎡)	⑬ 양도지분	⑭ 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0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1조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또는 대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와 같이 부동산등 양도내용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 서류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별지제84호서식) 또는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별지제84호의4서식) 2. 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3.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 기타필요경비 증명서류(세금계산서 등)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이 확인서는 부동산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2. 확인서 사용전에 부동산등 양도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고내용에 따라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작성방법

1. 양도자, 양수자 및 양도부동산 내용은 정확하게 적습니다.
2. 2인 이상이 공유부동산을 동일한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별로 신고서를 작성하되 첨부서류는 한부만 첨부하여 양도자 중 1인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합니다.
3. 양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양수자 1인만 작성합니다.
4. ②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5. ⑦등기원인란은 매매, 대물변제, 교환, 현물출자, 공매, 경매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등을 적습니다.
6. ⑧양도계약일자란은 양도계약서 작성일자를 적습니다.
7. ⑨부동산소재지란은 지번 및 아파트 동호수까지 적습니다.
8. ⑩종류란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양도하더라도 다른 칸에 구분하여 적습니다.
9. ⑪면적란은 양도부동산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10. ⑫양도지분란은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지분비율을 적습니다.
11. ⑬잔금일자란은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반드시 적습니다.(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 또는 계약서상의 잔금약정일자, 교환계약체결일,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 등)
12. 구비서류는 부동산양도내용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관리번호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① 거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 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주식 등의 거래 내역

구분		⑤거래자인원	⑥거래건수	⑦거래가액
합계	매도			
	매수			

[illegi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성명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분기별로 기재합니다.(예:2020년1월1일~2020년3월31일)
2. ②란부터 ④란까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⑤란 내지 ⑦란에는 매도 및 매수 거래에 대하여 거래기간별 합계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4. ⑧란에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기재합니다.
5. ⑨란에는 거래가 매도거래인지, 매수거래인지를 기재합니다.
6. ⑩란 내지 ⑪란에는 매도 및 매수한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7. ㉡ ⑫란부터 ⑮란까지는 거래일자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관리번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 (금융투자업자 제출용)		①거래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②금융투자업자명 (제출의무자)	③사업자등록번호							

주식등의 거래내역

구분		④거래자인원	⑤거래건수	⑥거래가액
합계	수량 증가			
	수량 감소			

⑦ 일련 번호	인적사항		주권발행법인				거래내역				⑱ 수수료	⑲ 매매손익	⑳ 계좌번호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시장 구분	⑪ 종목코드	⑫ 사업자 등록번호	⑬ 법인명	⑭ 거래 일자	⑮ 거래 구분	⑯ 거래 수량	⑰ 거래 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①란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 기간을 기재합니다.(예: 2020년 1월 1일~2020년 6월 30일)
2. ②란부터 ③란까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④란부터 ⑥란까지는 수량 증가 및 수량 감소 거래에 대하여 거래기간별 합계를 각 해당란에 기재합니다.(④란은 거래 순 인원 합계, ⑤~⑥란은 일련번호 합계를 기재합니다.)
4. ⑦란에는 거래일자를 기준으로 일자가 빠른 순서부터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⑧란과 ⑨란은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6. ⑩란은 증권시장 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코스피: 10, 코스닥: 20, 코넥스: 30)
7. ⑪란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합니다.(표준코드 12자리)
8. ⑫란과 ⑬란은 주권발행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9. ⑭란은 거래일자를 기재합니다.[매도, 매수인 경우에는 결제일(T+2일)로 그 이외에는 거래(결제)일로 작성합니다]
10. ⑮란에는 수량 증가 및 수량 감소에 대한 구분코드를 기재합니다.

종류	매도	매수	계좌간이체						감차 등 기타	
			입고			출고				
			본인	타인		본인	타인		수량감소	수량증가
				양도	양도외		양도	양도외		
코드	01	03	05	07	08	06	09	10	11	12

11. ⑯란과 ⑰란은 거래수량과 거래금액을 기재합니다.
12. ⑱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금액, ⑲란은 거래구분 코드가 "01(매도)"인 경우로서 ⑱란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3. ⑳란은 거래자의 거래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수 계산) ①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체 수입금액(해당 공동소유자가 지분을 소유한 기간에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에 해당 공동소유자가 소유한 해당 주택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u> <u>② 영 제8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을 초과해 보유하는 사람”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u>
<u><신 설></u>	<u>제6조의5(유지비 행헌련수당 및 유지향해헌련수당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헌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u>

제7조(벽지의 범위) 영 제12조제1
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벽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생략)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
칙」 별표 1의 지역

2. ~ 4. (생략)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
20조제1호 각목 및 동조제2호
각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
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에 관한 규칙」 별표2의 군인등
의 장려수당 제11호부터 제13호
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
련수당”이란 「군인 등의 특수
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2
의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를
말한다.

제7조(벽지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1의2.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
칙」 별표 1의 지역(‘1.벽지지
역’ 및 ‘2.도서지역’ 중 군지역
의 경우 열거된 면지역 전체
를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
20조제1항제1호 --- 같은 조
제1항제2호 -----영
-----영

제20조제1호 가목의 경우에는 1
 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
 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단체
 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
 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신 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
 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
 ② ~ ③ (생 략)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 (생

제20조제1항제1호 -----

 -----.

제15조의4(근로소득에서 제외되
 는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
 입 및 임차자금 대여이익의 범
 위) 영 제38조제1항제7호 단서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
 는 이익"이란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
 기업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
 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
 ·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말한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

 -----18을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기준내용연수등) ① (현행

②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제40조(준공된 날의 의의) 영 제75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영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또는 해당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개시일”이라 한다)중 빠른 날을 말하며, 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사용개시일을 말한다.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

②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illegible]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④ 영 제78조의3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2.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78조의3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
2.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3. 해당 사업과 관련한 업무상 운전자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⑤ 영 제78조의3제5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⑥ 영 제78조의3제9항-----

-----.

1. 2.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 제78조의3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사업의 수입금액에 같은 호 단서에 따른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타 수입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기타수입금액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1을 말한다.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영 제113조제1항 각 호

⑦ -----

----- 영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

-----.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법 제35조제3항제2호를-----

----- 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

-----.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 18을 ----.

제58조(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 라. (생략)

<신 설>

3. ~ 5. (생략)

② 삭 제

③ ~ ⑤ (생략)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④ (생략)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 (현행과 같음)

2.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
로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산
후조리원이 확인한 영수증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

④ (좌 동)

<신 설>

<신 설>

⑤ 영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 제55조에 따른 필요 경비로서 거주자의 연구 개발 활동에 지출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을 말한다.

⑥ 영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방법은 당해 과세기간부터 연속하여 5개 과세기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영 제117조제2항에 따른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1. 매출액 방법

- 1)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begin{aligned} & \text{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 & = A \times 50\% \times \frac{C}{B+C} \end{aligned}$$

- 2)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미만인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begin{aligned} \text{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 = A \times 50\% + \\ & \quad A \times 50\% \times \frac{C}{B+C} \end{aligned}$$

A: 연구개발비

B: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전체 매출액[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거주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한다)의 해당 거주자에 대한 매출액은 차감한다]

C: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모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무형자산의 사용대가와 관련된 매출액(거주자가 해당 매출액을 확인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거주자가 합리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갈음할 수 있다)의 합계액. 다만, 거주자에게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외국자회사의 경우 그 거주지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 전체 매출액(거주자의 해당 외국자회사에 대한 매출액은 차감한다)에 거주자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매출총이익 방법

- 1)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begin{aligned} & \text{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 & = A \times 75\% \times \frac{E}{D+E} \end{aligned}$$

- 2) 해당 과세기간에 거주자의 전체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미만이 소요되는 연구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
43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
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배율”이란 3.2(법 제1
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6)를 말한다.

<신 설>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 략)
③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text{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 A \times 25\% + A \times 75\% \times \frac{E}{D+E}$$

A: 연구개발비

D: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거주자의
매출총이익

E: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중 무형자
산의 사용대가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 적용하는 배율) -----

----- 3.4-----

----- 2.8-----.

제67조의2(단순경비율을 적용하
는 수입금액의 범위) 영 제143
조제1항가목에서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고용
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
을 말한다.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
호,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영 제155조제8항 및 제10항제5

④영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
다.

④ —————
—————
—————
—————
———.

1. ~ 3. (생략)

4. 영 제15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재학증
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생략)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② (생략)

③ 영 제155조제18항을 적용받
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⑤ 제3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
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
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고 -----

⑥ (현행과 같음)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매도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에는 소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사실을 입
증하는 서류

④ ~ ⑥ (생략)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

④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①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와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각각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삭 제>

제75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삭 제>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 군
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
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
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
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
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
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
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
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② (생략)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
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
건)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
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
건) -----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신 설>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략)
② 영 제18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국외의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이하 이 조에서 “내부

-- 제71조제3항 -----

-----.

<삭 제>

<삭 제>

<삭 제>

제84조 영 제171조에 따른 부동산 등양도신고확인서는 별지 제88호서식에 따른다.

제86조의4(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좌동)

② -----

거래"라 한다)에 따른 국내원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 적용하
는 정상가격은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이 수행하는 기능, 부담
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 등
을 고려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 수행하는 기능[비거주자
고정사업장의 종업원 등이 자산
의 소유 및 위험의 부담과 관련
하여 중요하게 수행하는 기능
(이하 이 조에서 “중요한 인적
기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

③ 내부거래에 따라 국내사업장
에 귀속되는 자본은 다음 각 호
의 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절차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1. 국내사업장이 속한 본점과
독립된 기업들 간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국
내사업장에 적절하게 배분
2.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
분과 관련된 중요한 인적 기
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자산의 경제적 소유권을 배분
3. 위험의 부담과 관련된 중요

③영 제181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한 때에는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 인적 기능을 확인하여 국내사업장에 위험을 배분

4. 국내사업장에 관한 그 밖의 기능의 확인

5. 국내사업장과 본점 및 다른 지점 간 거래의 성격에 대한 인식 및 결정

6. 국내사업장의 자산 및 위험 배분에 기초한 자본의 배분

④ 영 제181조의2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 이 경우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2

내부거래에 관한 명세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지 제8호서식(갑)을 준용한다.

④ ~ ⑦ (생략)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생략)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
례)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
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4. 「국체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제1항제3
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
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93조(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부도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
이 있는 사람들이 원천징수 관
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8의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3. ~ 8의6. (생략)

9. (생략)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인 경우

2. · 3. (생략)

<신설>

-----.

1. ~ 8. (현행과 같음)

<삭제>

8의3. ~ 8의6.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

1. -----

----- 200만원 -----

2. · 3. (현행과 같음)

제99조의4(납세조합 교부금의 지급한도) 영 제221조제1항단서에
서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이

<u><신 설></u>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생 략)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 다. 1. ~ 7. (생 략) 8.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국 고보조금·보험차익금으로 취 득한 <u>고정자산</u>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9. ~ 36. (생 략) ③ (생 략)	<u>란 30만원을 말한다.</u> <u>제99조의5(국세청의 주식등 거래 내역 요청방법) 국세청장은 법 제174조의2제3호에 따라 금융 투자업자에게 주권상장법인 대 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의 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자 료제출 대상기간을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 청하여야 한다.</u>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8. ----- ----- ---- <u>자산에 대한</u> ----- ----- 9. ~ 3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